

조선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國왕의 判付 방식

이 강 육*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批答判付의 유형과 방식 |
| II. 啓字判付의 유형과 방식 | 1. 別紙批答 |
| 1. 奉教判付 | 2. 餘紙批答 |
| 2. 啓判付 | IV. 맺음말 |
| 3. 落點判付 | |

요약

조선시대의 法典과 官撰史料에 수록된 臣民의 上達文書 중 國왕이 判부하는 文書로는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 呈辭, 上疏, 笏子, 草記, 啓辭, 書啓 등 총 13종이 있었다.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國왕의 判부는 上達文書에 啓字印을 찍어 封結하는 判부와 啓字印을 찍지 않고 글로만 答변하는 判부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啓字判付로, 주로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에 활용되었고, 후자는 批答判付로, 주로 上疏, 笏子, 草記, 啓辭, 書啓에 활용되었으며, 呈辭의 경우에는 啓字判付와 批

*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사료번역자문위원

答判付가 둘 다 활용되었다.

啓字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 말미 여백에 啓字印을 찍는 관부로, 국왕의 처결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자를 적느냐에 따라 奉教判付, 啓判付, 落點判付로 나뉘었다. 奉教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奉教’ 2자를 적는 관부로, 單子和 照律啓目에 활용되었다. 啓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啓’ 자를 적는 관부로,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 呈辭 등에 활용되었다. 落點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落點’ 2자를 적는 관부로, 주로 單子에 활용되었다.

批答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지 않고 국왕의 비답을 적어서 내려주는 관부로, 비답을 어디에 적느냐에 따라서 別紙批答과 餘紙批答으로 나뉘었다. 別紙批答은 신하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비답을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적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上疏, 筭子, 呈辭에 활용되었다. 餘紙批答이란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啓字印을 찍지 않고 국왕의 비답을 적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草記, 啓辭, 書啓에 활용되었다.

啓字判付를 하는 것이 원칙인 상달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啓字印을 찍기 때문에 啓字判付 대신에 批答判付를 활용할 수 없었다. 다만 呈辭는 啓字判付를 활용하되, 관원의 질병 때문에 휴가를 청하거나 교체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身病呈辭, 鍼灸呈辭, 沐浴呈辭 등에 대해서는 批答判付를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批答判付를 하는 것이 원칙인 상달문서의 경우에는 批答判付 대신에 啓字判付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上疏와 筭子에서 청한 대로 辭職을 허락하거나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回啓할 필요가 있을 때, 草記·啓辭·書啓를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回啓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啓字判付를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啓, 奉教, 落點, 啓下, 啓字印, 判付, 批答

I. 머리말

조선시대에 신하와 백성이 국왕 및 東宮에게 올린 上達文書는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官撰史料에 수록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의 上達文書는 朝鮮王朝實錄 이외에도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上達文書를 작성하는 방식은 『經國大典』 「禮典」의 말미와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등에 수록되어 있다. 『경국대전』과 『전율통보』에 각각 文書式이 수록되어 있는 상달문서를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국대전』: ① 啓本式 ② 啓目式

『전율통보』: ① 進箋式 ② 京司啓本式 ③ 啓目式 ④ 草記式 ⑤ 外方啓本式 ⑥ 狀啓式

⑦ 上疏式 ⑧ 筭子式 ⑨ 上書式 ⑩ 上言式 ⑪ 呈辭式 ⑫ 下直單子式

⑬ 謝恩單子式 ⑭ 六行單子式 ⑮ 問安單子式 ⑯ 祇受單子式 ⑰ 守令薦單子式

위의 문서식 중에서 京司啓本式과 外方啓本式을 하나의 啓本式으로 통합하고, 각종 單子式을 하나의 單子式으로 통합할 경우에 상달문서는 箋文, 啓本, 啓目, 草記, 狀啓, 上疏, 筭子, 上書, 上言, 呈辭, 單子 등 11가지가 된다. 『百憲摠要』에 수록된 상달문서의 문서식도 이상의 문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법전에는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수록되어 있는 상달문서로는 啓辭, 書啓, 別單, 擊錚原情 등 4가지가 더 있다.¹⁾ 이들 문서까지 합하면 상달문서는 15가지가 된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 중에는 위에서 거론한 상달문서를 제외하고 신하가 국왕에게 올린 상달문서로 致詞가 더 있어, 이들을 모두 합하면 조선후기의 상달문서는 총 16가지가 된다. 이들 16가지 상달문서 중 臣民이 東宮에게 올리던 上書를 제외하면, 신민이 국왕에게 올리던 상달문서는 총 15가지가 된다.²⁾

이들 상달문서는 조선시대에 문서 출납을 담당하였던 承政院을 통해 국왕에게 전달되어 국왕의 判付를 받았고, 국왕의 判付를 받은 상달문서도 承政院을 통해 해당 신민에게 전달되었다. 다만 箋文과 致詞는 국가에 慶事가 있거나 哀事가 있을 때 국왕과 大妃 등에게 축하하거나 위로할 때 올리던 문서로, 다른 상달문서처럼 국왕의 관부를 받는 문서가 아니었다. 따라서 국왕의 관부를 받는 상달문서만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신민의 상달문서는 총 13가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영조대와 정조대의 『승정원일기』 중 각 1개월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啓本, 啓目, 狀啓, 上疏, 筭子, 草記, 單子, 啓辭, 書啓 등 총 9개의 상달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2009), 333쪽. 『일성록』에는 이들 문서 외에도 別單과 上言, 擊錚原情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일성록』에는 手本도 수록되어 있으나, 手本은 신민이 국왕에게 직접 올리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신민이 동궁에게 올리던 상달문서는 上書 이외에도 啓本의 이름을 바꾼 申本, 啓目的 이름을 바꾼 申目, 장계의 이름을 바꾼 狀達, 啓辭의 이름을 바꾼 達辭 등이 더 있다. 신민이 동궁에게 올리던 문서에 대해서는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4) 참조.

判付는 가리키는 범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듯하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로는 국왕이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켰다.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할 때에는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방식과 啓字印을 찍지 않고 글로만 답변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넓은 의미의 판부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었다. 둘째, 중간적인 의미로는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켰다. 이 때의 판부는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만 가리키고, 국왕이 글로만 답변하는 것은 批答이라고 하여 구별하였다. 즉 판부와 비답을 각각의 국왕문서로 보는 것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啓字印,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入啓한 承旨의 職名과 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셋째, 좁은 의미로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啓字印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켰다.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단행본과 논문으로 다수 발표되었다.³⁾ 그리고 국왕의 判付와 批答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부 발표되었다.⁴⁾ 그러나 신민의 상달문서 전반에 대한 국왕의 判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법전과 관찬사료에 수록된 상달문서 13개에 대한 국왕의 판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보려고 한다. 13개의 상달문서에 대한 판부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의 문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겠으나 그중 절반 가량은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판부 방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개개의 문서를 연구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군신 사이에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승정원의 문서출납 과정까지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판부의 세 가지 의미를 두루 사용하려고 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판부로 보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판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하나는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啓字印을 찍지 않고 글로만 답변하는 방식이다. 전자를 啓字判付라 하고 후자를 批答判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13개 상달문서에 대한 판부가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95; 심영환, 「고문서용어 풀이 -草記-」, 『고문서연구』 2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藏書閣』 제12집, 2004;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無啓目單子の 형식과 용례」,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조선초기 啓目 연구」, 『고문서연구』 제39호, 한국고문서학회, 2011; 조광현, 「朝鮮 後期 褒貶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45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日省錄』 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上疏와 劄子の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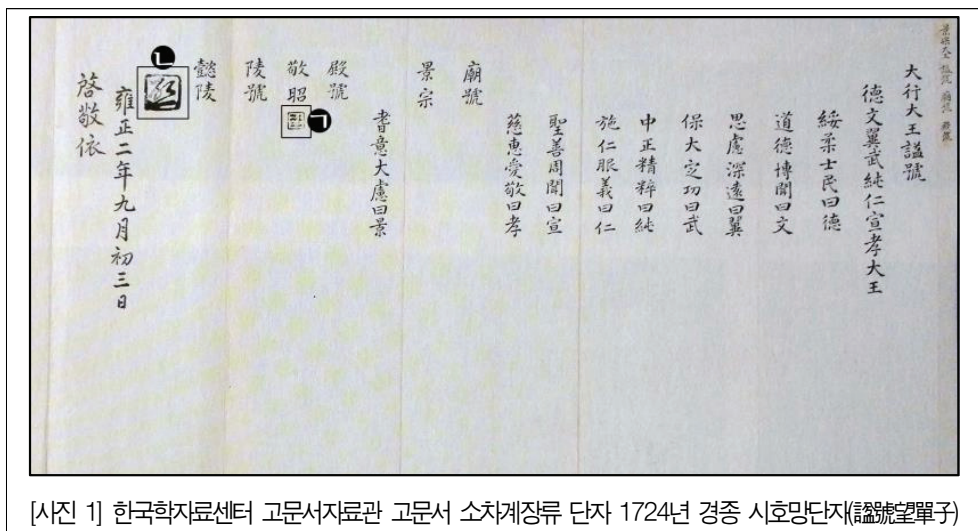
4)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3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8; 명경일, 「조선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규장각』 4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노인환,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47집, 한국고문서학회, 2015.

II. 啓字判付의 유형과 방식

啓字判付는 國왕이 臣民의 上達文書에 啓字印을 찍어 批答하는 判付를 가리킨다. 사료에서 啓字印이 처음 보이는 시기는 세조 9년(1463)으로, 內官이 啓字印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이 『세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⁵⁾ 그 뒤 세조 10년(1464)에는 세조가 啓字印을 만들어 上達文書에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草書로 「啓」 자를 새겨서 啓下하는 문서에 찍어 표시하게 하라.’라고 명하였다.⁶⁾

위의 사례는 세조가 啓字印을 만들어 上達文書에 批答하였다는 의미로 적도록 한 것이다. 啓字印을 사용한 이후로 세조는 啓下하는 모든 문서에 반드시 啓字印을 찍도록 하였고, 이후 왕들도 上達文書를 啓下할 때 啓字印을 찍어서 내려준 기록들이 꾸준히 보인다.⁷⁾ 啓字印은 國왕의 批答을 표시하기 위해서 批答하는 문서에 찍었으므로 啓字印에 새겨진 ‘啓’ 자는 ‘계하다.’ 또는 ‘批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 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자료관 고문서 소차계장류 단자 1724년 경종 시호망단지(認號望單子)

- 5) 『세조실록』 9년 6월 4일(임술), “遂傳旨義禁府曰: ‘出納公事, 依式計數, 且下問未答公事, 每三日具由啓達事, 已曾立法。承傳內侍李得守廢閣不遵, 啓字印擅自佩持, 不揀已啓未啓, 隨意著下, 凡肅拜人, 不啓而答以已啓, 推鞠以啓。’ 命罷得守職, 還仕。”
- 6) 『세조실록』 10년 4월 27일(기유), “命 ‘刻草書啓字, 印啓下文書, 以爲標。’”
- 7) 『세조실록』 12년 2월 27일(기해), “御書: ‘一, 凡分軍、命將、發兵等事, 須考制勝圖書。一, 啓下公事, 考啓字圖書。一, 問字公事、某啓公事等, 考定字圖書, 乃定。’”; 『성종실록』 14년 12월 19일(무인), “都承旨金礪石啓事, 仍啓曰: ‘凡承旨親啓事, 則不印啓字, 只署承旨之名, 而判下。’”; 『연산군일기』 7년 12월 5일(기유), “承旨李自健、張順孫啓: ‘布帛、米粍、綵段等物, 令該司入內事, 只憑司謁口傳未便。今後如布帛等重物, 請書傳旨以下, 其餘細碎之物, 書物目以入, 印啓字以下。’”; 『중종실록』 15년 2월 12일(신미), “傳曰: ‘傳香時, 屢幸香室親押, 名則美矣, 而無其實, 故大臣亦言不須親押。今後香祝單子, 印啓字而下, 則即入內受押, 以爲恒規。’”

啓字印은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大啓字印은 상달문서 등을 판부할 때 사용하였고, 小啓字印은 落點하거나 誤字를 수정할 때 등에 사용하였다.⁸⁾ [사진-1]에서 ㉠은 小啓字印이고 ㉡은 大啓字印을 찍은 것이다. 啓字印은 조선시대 내내 국왕이 상달문서를 재가할 때 사용하였는데, 고종 43년(1906)에 大啓字印은 宮廷 및 宮內府와 관련된 內部의 문서에만 사용하고 小啓字印은 황제에게 아뢴 사안을 改正하거나 增補할 때만 사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이듬해에 이것도 폐지되었다.⁹⁾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판부할 때에는 大啓字印을 찍어 판부하는 경우와 大啓字印을 찍지 않고 판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전자가 啓字判付인 셈이다. 啓字判付는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하였으므로, 啓字判付를 하는 문서인 狀啓와 啓本 등을 작성할 때에는 말미에 啓字印을 찍고 판부 시기와 좁은 의미의 判付 등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였다.¹⁰⁾

判付는 국왕의 처결이기 때문에 翰林이나 注書도 적지 못하고 반드시 承旨가 직접 작성하였다.¹¹⁾ 그런데 상달문서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동일한 상달문서라도 사안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승지가 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判付規式』과 『喉院笏記』였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서울역사박물관에는 作帖 형태로 만들어진 『判付規式』이 남아있고,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에는 책자 형태로 편집된 『喉院笏記』가 남아 있다.¹²⁾ 『判付規式』과 『喉院笏記』는 일부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다. 이들 책에는 승정원의 6개 承旨房이 각각 전담하여 처리할 문서를 분류해놓았고, 승지가 사안에 따라 작성해야 할 傳敎와 判付의 사례를 실어 놓았다. 그중 판부의 사례는 啓目, 啓本, 狀啓, 單子에 대해 판부하는 사례를 啓字印이 찍히는 위치와 함께 예시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상달문서에 대한 啓字判付라고 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는 草記에 대한 판부의 예시를 실어놓았는데, 草記에 대한 판부에는 원칙적으로 啓字印을 찍지 않기 때문에 啓字印을 찍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정조는 승지가 입시할 때 判付規式을 笏記로 만들어 草紙軸에 끼워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이는 어전에서 국왕의

8) 『銀臺便攷』 「兵房攷」 〈標信〉, “啓字大小各一【下方, 刻草書啓字。】用於啓下文書。”

9) 『고종실록』 43년 8월 3일(양력), “布達第三百四號, 啓字奏請規則【啓字, 宮廷及宮內府所關內部事務表彰聖旨之章。小啓字, 奏請事項改正增補時所用。】頒布。”; 『순종실록』 1년 12월 28일(양력), “布達第百八十三號, 啓字奏請規則廢止件。”

10)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 11월 18일, “吳挺緯啓曰: ‘凡狀啓及啓本, 必有紙末餘地, 可以踏啓字書判付, 而近來外方專不致察, 判付之際, 每甚苟簡。今見慶尙監司洪處厚啓本, 尤無餘地, 極爲非矣, 請推考。’”

11) 『연산군일기』 2년 9월 20일(계해), “承政院啓: ‘前者掌隸院所啓內需司關字判付, 皆非臣等所書。故招內需司員金呂山問之, 答曰『此書題, 尙孝孫所書。』夫政院古(親→稱)喉舌之地。凡公事, 必由此出入而後, 朝廷紀綱不亂。今內需司擅啓而擅書判付。大抵判是王言, 故雖注書、翰林, 不得書, 而惟承旨得書, 豈書題所得書!’”;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4일, “正言金南重來啓曰: ‘凡啓下判付, 必承旨手書者, 所以重其事而防奸僞也。人主命令, 豈有不由政院而徑下該掌之事乎! 內侍府留置公事, 內官自書日月, 流例有無, 雖不敢知, 而非謂錄動重事也。既書日月, 又書其姓, 是即判付, 而矇矓出納, 濫圖虛錄, 其爲設計, 殊極可愕, 而聖批, 以『承傳色, 典司謁所犯, 不同。』爲敎。自書判付者, 承傳色也, 司謁, 只文書出納而已。以此言之, 則承傳色先犯其罪也, 司謁亦既拿鞠, 則承傳色, 寧有獨免之理乎! 請亟命拿鞠定罪。’” 아래의 사례처럼 啓字印을 찍고 비답을 적는 것이 內官의 직임이라는 말이 보이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격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啓字印을 찍는 것은 內官이 담당하였다. 『경종실록』 1년 12월 29일(을유), “內官之任, 凡於公事, 踏啓字書批答而已, 寧有干犯之理!”

12) 『判付規式』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史部-政法類-刑獄·詞訟-刑政一般(가람古349.102-P192), 『喉院笏記』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고서-기타|정치·행정·명령|사부-직관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부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¹³⁾ 고종 때 간행된 『銀臺條例』 「附錄」에도 ‘判付規式’이 실려 있다.

啓字判付는 좁은 의미의 판부를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자를 적느냐에 따라 ‘奉教判付’, ‘啓判付’, ‘落點判付’로 나눌 수가 있다. 위에서 말한 『判付規式』에 수록된 啓字判付도 이 세 가지의 유형과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1. 奉教判付

奉教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을 적을 때 그 서두에 ‘奉教’ 2자를 적는 判付를 가리킨다. 신민의 상달문서를 판부할 때 ‘奉教’ 2자를 적기 시작한 시기는 태종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예조가 上書하였다.

“禮라는 것은 위와 아래를 분별하는 것이므로, 언어와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天子로부터 나오는 것은 詔나 誥라고 하고 太子와 諸王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劄이나 敕라고 하니, 신하들이 감히 이러한 어휘를 침범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왕조의 질박한 폐습을 이어받아 殿下로부터 나오는 것을 判이라고 부르니, 신하들이 감히 이 어휘를 침범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직함 중에는 判書·判事·判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판결을 받았다.[申判依申]는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교를 받들었다. [奉教依允]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결을 받았다. [申判可]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교를 받들었다.[奉教可]로 바꾸며, 「~에 넘겨주라.」라고 판결을 받았다. [申判付]는 「~에 내려주라.」라고 하교를 받들었다.[奉教下]로 바꾸어야 禮文에 합치될 듯합니다.”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¹⁴⁾

①의 사례에 의하면, 그 동안 국왕이 신하들의 문서에 대해 재가할 때 좁은 의미의 판부 서두에 ‘申判’이라고 쓰던 것을 ‘奉教’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예조의 요청에 따라 태종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세종 15년(1433)에는 ‘申’ 자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뢰다.’의 의미이고 ‘申判’을 ‘奉教’로 바꾸었으므로 ‘善申’, ‘申呈’, ‘知申事’라는 어휘도 다른 말로 바꾸는 문제를 예조와 詳定所에서 의논하여 아뢰라고 세종이 명하였다.¹⁵⁾ ①의 사례가 나오기 이전 시기의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왕의 판부를 ‘申判’으로 기록한 사례가 몇

13) 『政院故事』 「吏攷」 〈通行雜式〉, “此後持公事入侍, 判付規式, 出笏記, 各房承旨挿于草紙. 事, 下教. 【庚子九月初五日】”; 『銀臺便攷』 「通攷」 〈承旨〉, “凡入侍時, 判付式笏記, 挿于草紙軸入侍. 【庚子九月初五日下午教.】”

14) 『태종실록』 11년 9월 26일(갑신), “禮曹上書曰: ‘禮者, 所以辨上下, 於言語文字, 不可相犯. 出乎天子者, 曰詔日誥; 太子、諸王, 曰令日教, 則臣下不敢違犯. 今國朝承前朝樸略之弊, 出於殿下, 謂之判, 則臣下當不敢有犯, 乃有以判書、判事、判官爲衙者. 乞以申判依申爲奉教依允, 以申判可爲奉教可, 以申判付爲奉教下, 庶合禮文.’”

15) 『세종실록』 15년 윤8월 22일(임신), “傳旨禮曹: ‘本國用申字之例, 曰申判依申, 曰善申, 曰申呈, 曰知申事. 原其指意, 以下達上之辭也, 而與奏啓字同意. 至於曰申六部差誤、曰應申不申, 則亦諸衙門通用之字, 是不得無疑焉, 令集賢殿稽古制公式. 今『洪武禮制』、『大明律』, 如曰右申某司、縣申州、州申府之例, 亦皆非臣下達君上之辭, 而全用於衙門, 明矣. 此雖小節, 然通用之字,

진 보인다.¹⁶⁾ 그리고 위의 사례가 있고 난 이후로는 ‘奉教’로 판부한 사례가 자주 보인다.¹⁷⁾

② 예조가 아뢰었다.

“唐나라 憲宗 元和 1년(806)에 太常禮院이 아뢰기를, ‘가을의 마지막 달에 明堂에서 大享을 지내 하늘의 上帝께 제사를 지낼 때 先王이신 順宗의 神主를 모셔 와서 配享해야 합니다.’ 하니, 詔書를 내리기를, ‘삼가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옛 제도에 따라 못 신하들이 아뢴 내용 중 先王 및 先后와 관계되는 사안은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하교를 받들었다. [奉教依允]’ 라고 판부하던 것을 ‘삼가 아뢴 대로 하겠다.’라고 하교를 받들었다. [奉教敬依]’로 바꾸어 판부하소서.”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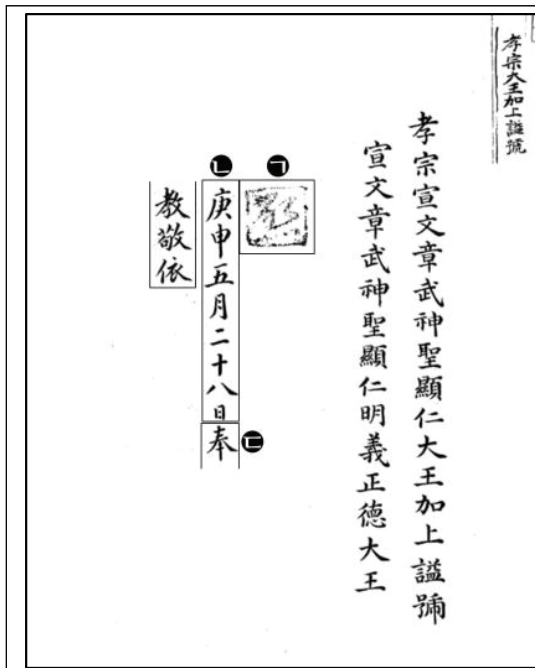
위의 사례에서는 奉教判付 중 승하한 왕 및 왕후와 관계되는 사안은 ‘아뢴 대로 윤택한다.[依允]’라고 판부하던 것을 ‘삼가 아뢴 대로 하겠다.[敬依]’라고 바꾸어 판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승하한 국왕 및 왕후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 판부할 때 奉教判付를 한 사실은 조선후기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¹⁹⁾ 그 외에 국왕의 嘉禮를 행할 때 왕비의 집안에 내려주는 教文, 나라에 경하할 일이 있어 반포하는 教文, 尊號를 올릴 때 致詞·箋文·玉冊文·樂章文·議號單子 등을 신하들이 지어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을 경우에도 奉教判付를 하였다.²⁰⁾ 조선후기에 이러한 사안들을 국왕에게 재가 받을 경우에는 모두 상달문서 중 單子로 올려 재가를 받았다.

[사진-2]는 영조 16년(1740)에 孝宗에게 추가로 올릴 諡號를 정해서 올린 望單子이다. 원래의 望單子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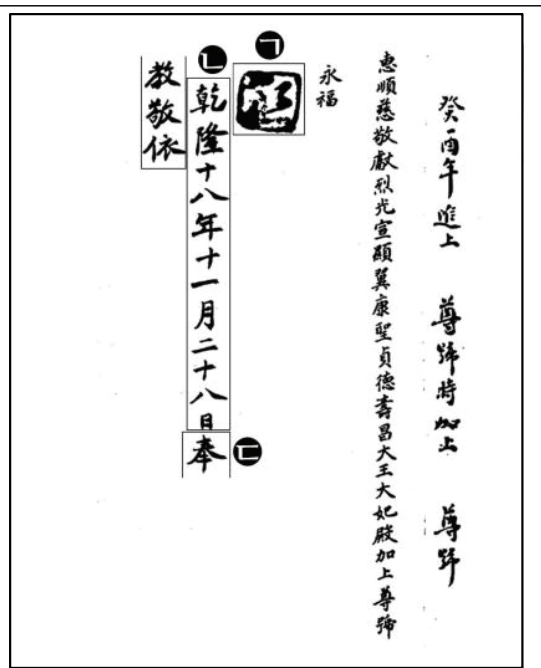
施之於啓達君上之語, 實爲無據, 而至爲職名, 未安於義. 申判依申, 今已改之, 善申、申呈、知申事之辭, 改之, 何如? 與詳定所同議以聞.”

- 16) 『정종실록』 2년 6월 1일(갑오), “臺諫交章上言: ‘……’ 申判: ‘依所申私莊安置.’”; 『정종실록』 2년 6월 2일(을미), “司憲府上言請張思吉、思靖等罪, 不允. 疏曰: ‘……’ 申判: ‘待上京更議, 姑勿舉論.’”
- 17) 『태종실록』 15년 8월 5일(기사), “兵曹與三軍都鎮撫同議上吹角令啓曰: ‘……’ 奉教: ‘依允.’”; 『태종실록』 17년 9월 26일(무인), “司憲府上疏. 其略曰: ‘……’ 奉教: ‘依允. 其已曾從賤後, 今年九月初一日以前誤決未呈, 勿許禁斷, 依曾降教旨, 以決絕度數決之.’”; 『단종실록』 2년 5월 19일(기사), “義禁府啓: ‘保安驛丞金思義, 以救荒差使員, 不以時散義倉穀, 逮遣人摘姦時, 不錄簿, 率爾分給; 高城郡事許銖不修犴獄, 造櫃囚人, 竝律應杖八十.’ 奉教: ‘依允. 銖, 勿論.’”
- 18) 『세종실록』 2년 5월 28일(을미), “禮曹啓: ‘唐憲宗元和元年, 太常禮院奏『季秋大享明堂, 祀昊天上帝, 合奉皇順宗配神作主.』 詔曰『敬依.』自今乞依古制, 群下所啓凡屬先王、先后之事, 奉教依允, 改稱奉教敬依.’ 從之.”
- 19) 『銀臺便攷』 「禮房攷」〈親祭〉, “廟、社、宮大祭, 前期三朔, 該曹親祭取稟, ‘奉教敬依.’ 省牲、省器親臨與否, 該曹前期稟旨磨鍊.”; 『銀臺條例』 「附錄」〈判付規式〉, “社稷、宗廟、各陵、殿、肇慶廟祭文, 書‘奉教【教字高一字】敬依.’ 景慕宮、顯隆園, ‘奉教恭依.’ 文廟、關王廟、各宮、廟、園、墓及諸臣致祭文與教書, ‘奉教可.’ 竝書長銜. ○ 親祭、親傳香取稟, 敬依, 則書‘奉教敬依.’ 攝儀, 則‘奉教攝儀爲良如教.’ 刈穫取稟, 親刈, 則‘奉教親刈.’, 攝刈, 則‘奉教攝刈爲良如教.’ 竝書長銜.”
- 20) 『銀臺便攷』 「禮房攷」〈嘉禮〉, “納采、納徵、告期教文, 自藝文館來呈, 啓下後, ‘奉教可.’ 判付, 出給都監, 自都監正書入來, 請承傳色入之.”; 『銀臺便攷』 「禮房攷」〈上尊號〉, “樂章文、玉冊文, 製造官在家製之, 使藝文館吏來呈, 則盛函, 以司謁入啓, 啓下後, 大年號、‘奉教敬依.’、長啣判〈府一付〉, 置于啓板, 知委都監.”; 『銀臺便攷』 「禮房攷」〈陳賀〉, “無敕命, 則以教文舉行, 頒教文啓下, 則‘奉教可.’ 長啣判付.”; 『銀臺條例』 「附錄」〈判付規式〉, “親上致詞·箋文、玉冊文、樂章文、議號單子, 書‘奉教【教字高一字】敬依【大殿、中宮殿, 則‘奉教可.』’.” 頒教文, ‘奉教可.’ 他行, 竝書長銜【某承旨、某階、兼職、臣、姓、着銜.】.”

諡號의 후보를 單望으로 적었다. ㉠~㉢은 계자관부로, ㉠은 국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고, ㉡은 국왕의 관부 시기를 나타내며, ㉢은 국왕의 처결 사항을 적은 좁은 의미의 관부이다. ㉢에 적힌 ‘奉教’ 2자를 통해 이 단자에 대해 奉教判付한 것을 알 수 있다. 효종에게는 처음에 諡號를 ‘烈文毅武神聖至仁’이라고 정하였다가 ‘宣文章武神聖顯仁’으로 수정하였고, 영조 16년에 위의 望單子에 나오는 대로 ‘明義正德’ 4자를 추가로 올렸다.²¹⁾



[사진 2]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경신년
효종 가상시호망단자(加上諡號望單子)



[사진 3]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1752년 인원왕후(仁元王后) 존호망단자(尊號望單子)

[사진-3]은 영조 29년(1753)에 仁元王后에게 추가로 올릴 尊號를 정해서 올린 望單子이다. 원래의 望單子에는 인원왕후에게 올릴 尊號의 후보를 單望으로 적었다. ㉠~㉢은 계자관부로, ㉠은 국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고, ㉡은 국왕의 관부 시기를 나타내며, ㉢은 국왕의 처결 사항을 적은 좁은 의미의 관부이다. ㉢에 적힌 ‘奉教’ 2자를 통해 奉教判付한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의 두 번째 繼妃인 인원왕후에게는 숙종 39년(1713)에 처음으로 惠順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경종 2년(1722)에는 慈敬 2자를 추가로 올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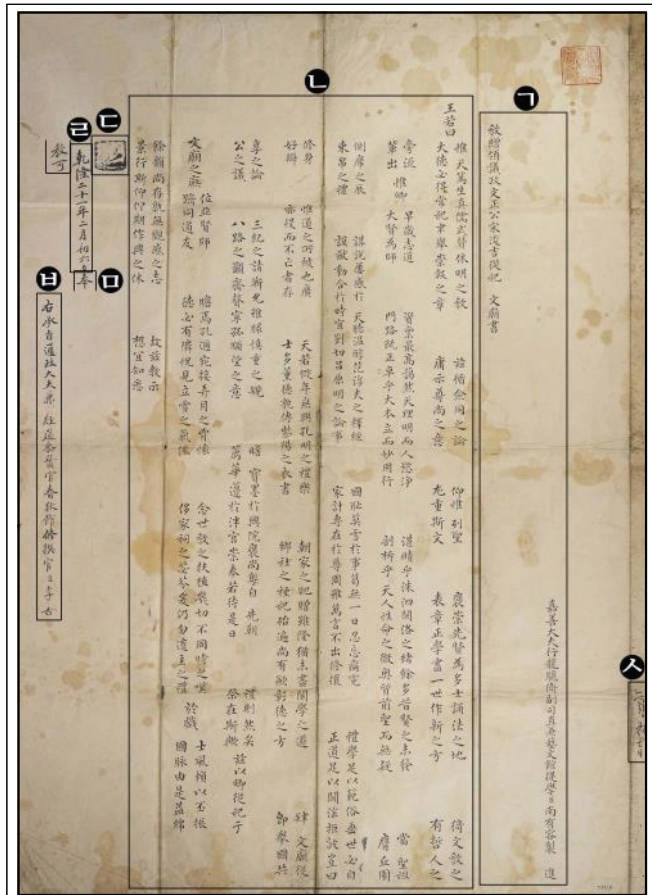
21) 『현종실록』 즉위년 5월 11일(신미), “領敦寧府事李景奭、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等, 與六曹參判以上諸宰, 俱會于賓廳, 議定大行諡號曰烈文毅武神聖至仁。廟號曰孝宗。陵號曰翼陵。……其後, 以烈文毅武至仁, 俱犯列聖徽號, 改以宣文章武神聖顯仁, 陵號亦改以寧。”;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5월 28일,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加上諡號, 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單子入啓, 傳曰: ‘禮曹郎官, 卽招給之。’”

며, 영조 2년(1726)에는 獻烈 2자를 추가로 올렸고, 16년(1740)에는 두 차례에 걸쳐 光宣과 顯翼을 각각 올렸으며, 23년(1747)에는 康聖 2자, 27년(1751)에는 貞德 2자, 28년(1752)에는 壽昌 2자를 올렸고, 29년(1753)에 위의 망단자에 나오는 永福 2자를 올렸으며, 그 이후 32년(1756)에도 隆化 2자를 추가로 올렸다.²²⁾

[사진-4]는 藝文館提學 南有容이 宋浚吉을 文廟에 配享할 때 내릴 敎書의 초본을 지어 올린 製進單子이다.²³⁾ 製進單子是 知製敎 등 신하가 대신 지은 국왕문서를 재가 받기 위해서 국왕에게 올리던 單子이다.

㉠은 제진단자의 서두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이 단자를 올린 관원의 長銜·臣·姓名이 기록된 부분이다. 또 하나는 單子名이다. 이 단자에 대해 국왕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단자대로 敎書를 작성해서 내려주게 된다. 따라서 여기의 單子名은 敎書名이기도 하다. ㉡은 단자의 본론이자 敎書의 내용으로, 宋浚吉을 문묘에 배향하는 이유와 경위 등을 밝히고 있다. 본론은 교서의 형식에 따라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맺고 있다. 단자의 말미는 없다. ㉢~㉨까지는 계자관부이다. ㉢은 국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고, ㉣은 국왕의 관부 시기를 나타내며, ㉤의 ‘奉敎可’는 좁은 의미의 관부로, 국왕으로부터 ‘可’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奉敎判付이다. ㉥은 이 단자를 入啓하여 관부를 받은 승지를 밝힌 것으로, 승지의 長銜 및 ‘臣’자와 姓을 적고 署名을 하였다. ㉦은 판결한 이후에 날짜를 추가로 적어놓은 것이다.

이상 관찬사료와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奉敎判付는 상달문서 중 주로 單子を 관부할 때 활용되었다. 단자 이외의 문서로는 啓目を 관부할 때에도 奉敎判付가 활용되었다.



[사진 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문서-국왕문서-교서-宋浚吉(1책-71416)

22) 『영조실록』 33년 3월 26일(정사), “我聖考三十九年癸巳, 受尊號曰惠順, 皇兄二年壬寅, 又上尊號曰慈敬, 小子嗣服二年丙午, 又上尊號曰獻烈, 十六年庚申, 又上尊號曰光宣, 同年, 又上尊號曰顯翼, 二十三年丁卯, 又上尊號曰康聖, 二十七年辛未, 又上尊號曰貞德, 二十八年壬申, 又上尊號曰壽昌, 二十九年癸酉, 又上尊號曰永福, 三十二年丙子, 又上尊號曰隆化。”

23) 敎書의 製進單子에 대해서는 노인환,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4), 36~42쪽 참조.

③ 照律啓目에는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하교를 받들었다.[奉教依允]라고 적고, 【議功과 議親을 적용할 대상일 경우에는 ‘아뢴 대로 윤택하며, 議功과 議親을 적용하여 각각 1등급씩 감해주라.’라고 하교를 받들었다.[奉教依允爲旆, 功議各減一等爲良如教。]】라고 적는다.】兩司의 臺諫과 2품 이상의 照律啓目에는 ‘이 형률대로 시행하라.’라고 하교를 받들었다.[奉教依此律施行爲良如教]라고 적는다. 모두 長銜을 적는다.²⁴⁾

- ❶ 照律啓目 : 法司가 법률 조문에 따라 죄인에게 적용할 刑律과 刑量을 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할 때 올리던 啓目이다.
- ❷ 議功 : 功臣이나 功臣의 후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시대에는 죄인의 형량을 특별히 감해줄 수 있는 경우를 8가지로 규정하고 八議라고 불렀는데, 議功은 그 중의 하나이다.
- ❸ 議親 : 국왕과 친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議親도 八議 중의 하나이다.

위의 사례는 상달문서 중 하나인 啓目에 대해 관부할 때에도 奉教判付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승정원일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照律啓目에 대해 奉教判付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²⁵⁾ 『內閣日曆』에는 『銀臺條例』의 규정대로 議功과 議親의 대상에게 각각 1등급씩 형량을 감해주도록 한 奉教判付도 수록되어 있다.²⁶⁾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 중 奉教判付는 위의 그림으로 제시한 것처럼 單子에서만 확인하였다. 그리고 『銀臺條例』와 관찬사료에서 啓目에도 奉教判付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승정원일기』에서 啓本, 別單, 草記 등에 奉教判付한 사례를 한 두 건씩 확인하기는 하였다.²⁷⁾ 그러나 원래의 문서를 확인하지 못한다다가 기록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게 보면 상달문서 중 奉教判付가 적용되는 문서는 單子와 啓目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 『銀臺條例』「附錄」〈判付規式〉, “照律啓目, 書 ‘奉教依允。【有功、議, 則 ‘奉教依允爲旆, 功議各減一等爲良如教。】’ 兩司、二品以上照律啓目, ‘奉教依此律施行爲良如教。’ 並書長銜。”

25)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8일, “禁府照目: ‘……以此勸斷罪, 決杖一百, 告身盡行追奪, 流三千里定配, 私罪。’ 奉教判付: ‘依此律施行爲良如教。’”;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0월 2일, “司憲府照目: ‘兵曹判書李秉模緘辭原情云云。緘辭從重推考罪, 杖一百收贖公罪, 右律以施行是自乎矣, 係是二品, 上裁, 何如?’ 判付啓奉教: ‘依此律施行爲良如教。’”

26) 『內閣日曆』 정조 9년 11월 15일, “奎章閣檢校直閣臣李秉模、待教臣李崑秀等謹啓: ‘……向前尹行任罪狀乙良, 右律以施行, 何如? 尹行任, 功七代祖運, 光國功臣, 議達城尉徐景喬五親以議親。’ 乾隆五十年十一月十五日, 奉教: ‘依此律施行爲有矣, 功議各減一等爲良如教。’”

27)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2월 17일, “禮曹啓本: ‘來正月初八日宗廟春享大祭親祭, 取稟。’ 啓奉教: ‘敬依。’”;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윤5월 22일, “禮曹烈女南部故進士金聖迪妻李氏等旌閭別單, 奉教: ‘竝從多議施行。……令地方官表其水濱, 使邑人之往來觀者知所咨嗟稱獎爲良如教。’ 烈女中部故主簿安思一妻秦氏等別單, 奉教: ‘竝從多議施行。 其中多寡相均, 有難的決處, 原別單, 更爲付籤, 具由草記, 則當於名下措辭, 區別處分爲良如教。’ 孝子西部故都監砲手任壽萬等別單, 奉教: ‘竝從多議施行。 其中多寡相均, 有難的決處, 原別單, 更爲付籤, 具由草記, 則當於名下措辭, 區別處分爲良如教。’”;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10월 22일, “洪大協, 以禮曹言啓曰: ‘來十一月初七日, 行景慕宮冬享大祭, 親祭取稟。’ 奉教: ‘恭依。’”

상달문서에 ‘奉敎’ 2자를 적어 奉敎判付를 해야 하는데도 ‘啓’ 자를 적어 啓判付를 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들이기도 하였다.²⁸⁾ 東宮이 代理聽政할 경우의 奉敎判付는 ‘奉敎’를 ‘奉令’으로 적었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奉敎判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奉敎判付는 啓字判付 중 좁은 의미의 판부 서두에 ‘奉敎’ 2자를 적는 판부를 가리킨다. 奉敎判付는 태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세종 때에는 승하한 왕 및 왕후와 관계되는 사안은 ‘「삼가 아뢰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교를 받았다.[奉敎敬依]’라고 판부하도록 하였다. 奉敎判付는 주로 국왕 및 왕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올린 單子에 활용되었으며, 製進單子에도 奉敎判付를 하였다. 單子 이외에는 照律啓目에도 奉敎判付를 활용하였다.

2. 啓判付

啓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을 적을 때 그 서두에 ‘啓’ 자를 적는 判付를 가리킨다. ‘啓’ 자가 국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태종 때 ‘啓下’라는 어휘가 사용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³⁰⁾ 세종 때부터는 ‘啓’와 ‘啓下’가 신민의 상달문서를 판부할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보인다.

① 주상이 상복 차림으로 廬次에서 국무를 보살폈다. 代言 등이 들어와서 사안을 아뢰면 그들이 아뢰는 사안도 예전처럼 처결하지 않고 ‘어느 관사에 내려주라고 계하하였다.[啓下某司]’라고 적어 주기만 하여 해당 관사에서 의논한 뒤 다시 아뢰어 시행하게 하였다. 만약 주상이 처결한 사안이 있으면 代言司가 각 관사의 관리를 불러서 말을 해주거나 帖紙에 처결한 내용을 써서 내려주었다.³¹⁾

② 金益精이 아뢰었다.

“중국 송나라 황제가 상중에 있을 때에는 모두 內詔로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아뢰는 것들에 대한 판부는 예전 방식대로 奉敎로 판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상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

이에 ‘왕지를 삼가 받았다.[敬奉王旨]’는 ‘삼가 받았다.[敬奉]’라고만 하고, ‘口傳王旨’는 ‘口傳’이라고만 하며, ‘奉敎’는 ‘啓’라고 하고, 代言이 臣 자를 적고 서명한 뒤에 해당 劄에 내려주되, 上王

28) 『승정원일기』 효종 10년 윤3월 26일, “權大運啓曰: ‘此義禁府公事, 一度判付, 當以奉敎書之, 而【缺數字。】致察, 誤書啓字, 夜深之後, 始覺其非, 不勝惶恐之至, 付標改書以入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2월 3일, “又命書傳敎曰: ‘大祭傳香, 以攝行舉行。凡親祭、親傳香單子, 其若親行, 皆以敬依判下。而今此單, 以攝行下敎矣, 中官誤踏以下, 政院必以啓依允判付, 事體寒心。當該中官, 從重推考。’”

29) 『銀臺便攷』「吏房攷」〈代聽〉, “陵殿祭文, 啓則奉敎敬依長啣, 達則奉令敬依長啣, ……上裁, 則奉敎長啣, 徽裁, 則奉令長啣。”

30) 『태종실록』 4년 3월 1일(임인), “司諫院劾司憲執義尹思永。召司諫院掌務敎曰: ‘司憲府近來事多遲緩。慈恩寺僧與李謦相訟奴婢事及擊鼓啓下事, 托以各位不齊, 久不決折, 其所欲爲之事, 則謂備三員而爲之。臺諫相規, 自古然也, 宜問其故。’是以劾而請罪。”; 『태종실록』 6년 6월 5일(계해), “西北面都巡問使趙璞, 啓土官之制。啓曰: ‘……’啓下議政府。”

31) 『세종실록』 2년 7월 30일(병신), “上, 以衰服, 視事于廬次。代言等入啓事, 其所啓事, 亦不依舊判斷, 但書啓下某司, 令該司擬議更啓施行。如有判斷之事, 代言司召各司官吏語之, 或帖紙書辭以下。”

의 장례를 치른 뒤에 예전 방식으로 회복하게 하였다.³²⁾

①의 사례는 세종이 어머니 元敬王后가 승하한 뒤 상달문서의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承旨가 문서를 올리면 세종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결하지 않고 ‘啓下○○’라고 판부하여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해당 관사에서 의논한 뒤 아뢰어 시행하게 하였다. 만약 세종이 상달문서에 적힌 사안을 직접 처결하였을 경우에는 承政院이 해당 관사의 관원을 불러서 전달하거나 帖紙에 적어서 전달하였다.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啓下○○’ 형식으로 판부하기 시작한 사례는 태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세종 때에는 상달문서에 적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의 사례는 태종이 승하하여 장례를 치를 때까지 문서를 판부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일부 변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중 奉敎를 啓라고 바꾼 것은 啓의 의미가 奉敎와 유사한 의미임을 말해준다. 奉敎의 의미가 ‘하교를 받았다.’의 의미이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판부를 받았다.’의 의미이니, 啓의 의미도 ‘재가를 받았다.’ 또는 ‘판부를 받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 때에 奉敎를 啓로 바꾸어 사용한 기간은 태종이 승하하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일시적이었다. 그 뒤 세조 10년(1464)에는 啓字印을 만들어 상달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³³⁾ 앞에서 奉敎判付한 문서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奉敎判付한 문서에도 啓字印을 찍었기 때문에 상달문서에 啓字印이 찍힌 것만으로는 啓判付와 奉敎判付가 동일하여 구별이 어렵다. 啓判付가 奉敎判付와 구별되는 점은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사항을 적기 시작할 때, 즉 좁은 의미의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그 서두에 ‘奉敎’ 2자 대신에 ‘啓’ 자를 적었다는 점이다.

③ 尙傳 金舜孫이 감옥 안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아무리 형편없기는 하지만 주상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안의 경우에도 감히 중간에 사적인 생각을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傳旨의 경우에는 「아뢰 대로 윤택한다.」라고 재가를 받았다.[啓依允]라고 적은 뒤에 判下하는 것이 규례이니, 주상께서 환히 살피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찌 사적인 생각을 개입시켜 스스로 무거운 죄를 짓겠습니까!”³⁴⁾

④ 弘文館直提學 鄭光弼이 吏文庭試에서 글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司憲府에 내려져 국문을 받았다. 사헌부가 ‘私罪이며 50대의 笞刑을 치고 현재의 직임을 해임한 뒤 별도로 임용하는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적용할 刑律을 정하여 보고하여, 다음과 같이 재가를 받았다.

“아뢰 대로 윤택한다.”³⁵⁾

32) 『세종실록』 4년 6월 17일(임인), “金益精啓曰: ‘宋帝在衰絰, 皆以內詔施行。今凡啓, 依舊奉敎, 如何?’ 上曰: ‘使異平日, 可也。’ 於是敬奉王旨, 只曰敬奉; 口傳王旨, 只曰口傳; 奉敎曰啓, 代言稱臣署名, 下諸曹, 山陵後, 復舊。”

33) 『세조실록』 10년 4월 27일(기유), “命‘刻草書啓字, 印啓下文書, 以爲標。’”

34) 『성종실록』 25년 2월 20일(기묘), “尙傳金舜孫在獄中上書, 其略曰: ‘……臣雖無狀, 凡直承傳事, 猶不敢用情於其間。 況傳旨, 則書「啓依允。」後判下, 例也, 豈有容私於天日之下自作重罪乎!’”

35) 『연산군일기』 8년 1월 5일(무인), “弘文館直提學鄭光弼, 以吏文庭試不製, 下司憲府鞠之。以私罪笞五十解任別敍, 照律, 啓: ‘依允。’”

③은 국왕이 재가한 내용을 전달하는 傳旨에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재가를 받았다.[啓依允]라고 적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고, ④는 사헌부가 보고한 문서에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재가를 받았다.[啓依允]라고 판부한 사례이다. ‘啓依允’은 조선전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啓判付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 시대 내내 사료에 빈번하게 보인다.

조선시대의 상달문서에 대한 판부 중 이 ‘啓依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啓’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조선초기의 실록에 기록된 판부 중 ‘啓依允’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판부는 『태조실록』과 『정종실록』에 보이는 ‘王旨依申’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태종 11년(1411)에는 판부를 의미하는 ‘申判’을 ‘奉教’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면서 ‘依申’도 ‘依允’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³⁷⁾ 그에 따라 종래 ‘王旨依申’이나 ‘申判依申’이라고 판부하던 것을 ‘奉教依允’이라고 판부하였다.³⁸⁾ 세종 2년(1420)에는 ‘奉教依允’으로 판부하던 것 중 先王이나 先后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唐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奉教敬依’로 바꾸어 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에는 上王인 태종이 판부한 것은 세종이 판부한 것과 구별하여 ‘宣旨依允’이라고 하였다.³⁹⁾ 이것은 禮曹가 태종의 傳旨는 宣旨로 구별하여 부를 것을 청한 데 따른 조치에서 나온 것이었다.⁴⁰⁾ 성종 때는 국왕이 직접 ‘依允’이라고 쓴 판부라는 의미의 ‘御書依允’이 보이기도 한다.⁴¹⁾ 성종과 연산군이 문서에 ‘啓依允’이라고 판부한 이후로는 상달문서에 ‘啓依允’이라고 판부한 사례가 점차 빈번히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후기까지도 꾸준히 나타난다.⁴²⁾

조선후기에는 사안에 따라 ‘啓依允’과 ‘奉教敬依’ 등의 판부 내용을 정형화하여 사용하였으며, 東宮이 代理聽政할 때는 판부의 어휘를 강등하여 사용하였다.

⑤ 王世孫이 代理聽政할 때의 節目 중 추가해야 할 사항을 의정부가 정유년(1717 숙종43)의 예에 따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陵과 殿의 祭文에 대한 判付는 주상으로부터 啓下 받으면 ‘奉教敬依’라 적고 長銜을 적으며, 東宮으로부터 達下 받으면 ‘奉令敬依’라 적고 長銜을 적으며, 廟와 墓의 祭文에 대한 판부는

36) 『태조실록』 3년 8월 24일(신묘), “都評議使司所申: ‘……’ 王旨: ‘依申.’”; 『태조실록』 3년 11월 3일(기해), “都評議使司狀申: ‘……’ 王旨依申.”; 『정종실록』 2년 6월 20일(계축), “禮曹上言: ‘……’ 王旨: ‘依申.’”

37) 주 14) 참조.

38) 『태종실록』 18년 1월 13일(갑자), “咸吉道都觀察使柳思訥條上武備肄習事件: ‘……’ 奉教: ‘依允.’”; 『단종실록』 2년 5월 19일(기사), “義禁府啓: ‘……’ 奉教: ‘依允. 銖, 勿論.’”

39) 『세종실록』 1년 1월 26일(신미), “兵曹更定軍士朝會儀以啓: ‘……’ 宣旨: ‘依允.’”; 『세종실록』 1년 3월 29일(계유), “義禁府啓: ‘奴元端等謀潛居武陵島, 請杖一百.’ 宣旨: ‘依允.’”; 『세종실록』 1년 10월 29일(경자), “兵曹啓: ‘……’ 宣旨: ‘依允.’”

40) 『세종실록』 즉위년 8월 15일(임진), “禮曹請‘以上王傳旨爲宣旨, 其不從宣旨者, 以制書有違論罪.’ 從之.”

41) 『성종실록』 13년 4월 28일(병인), “傳曰: ‘前日新宗君, 以受賜弓, 其角有裂處, 請于弓房內官金末孫, 欲換他弓, 事雖未成, 謀則孔誦. 其鞠末孫, 照律以啓.’ 承政院卽照啓, 御書: ‘依允. 奪身身還仕.’”; 『성종실록』 19년 2월 20일(갑인), “李克培議: ‘安瑿, 雖事涉奸詐, 罪在赦前, 例當蒙宥.’ 御書曰: ‘依允. 安瑿罪, 雖蒙宥, 行是小人, 何復立朝! 金礪, 後政敍用.’”

42) 『중종실록』 3년 12월 9일(임신), “義禁府, 以僉知中樞府事李苗招辭啓曰: ‘……’ 招辭如斯, 事干人進來憑推, 何如?’ 啓: ‘依允.’”; 『선조실록』 9년 7월 16일(정미), “禮曹啓曰: ‘……’ 請令兵曹商確施行.’ 啓: ‘依允.’”; 『광해군일기』 즉위년 8월 3일(정사), “義禁府啓曰: ‘……’ 今此敕文內流以下竝放, 則洪雲海, 已免贓罪, 當在放釋之中. 本道監司處, 行移.’ 啓: ‘依允.’”

주상으로부터 啓下 받으면 ‘奉教可’라 적고 長銜을 적으며, 동궁으로부터 達下 받으면 ‘奉令可’라 적고 長銜을 적는다.

1. 啓目은 申目이라 부르되, 주상에게 올리는 문서의 안에 ‘啓目’이라는 문서명과 본론의 맺음말인 ‘何如’가 있으면, ‘啓依允’이라 적고 短銜을 적으며, 동궁에게 올리는 문서의 안에 ‘申目’이라는 문서명과 본론의 맺음말인 ‘何如’가 있으면 ‘達依準’이라 적고 短銜을 적으며, 주상에게 올리는 문서의 안에 ‘啓目’이라는 문서명과 본론의 맺음말인 ‘何如’가 없으면 ‘啓依所啓施行’이라 적고, 동궁에게 올리는 문서의 안에 ‘申目’이라는 문서명과 본론의 맺음말인 ‘何如’가 없으면 ‘達依所達施行’이라 적는다.⁴³⁾

위의 節目은 정조가 世孫으로서 代理聽政할 때 마련된 것으로, 영조의 관부는 ‘奉教敬依’, ‘奉教可’, ‘啓依允’, ‘啓依所啓施行’이라 적고, 세손의 관부는 ‘奉令敬依’, ‘奉令可’, ‘達依準’, ‘達依所達施行’이라 적도록 하였다. 관부의 어휘에 있어서 ‘啓’를 ‘達’로 강등하는 등 어휘의 사용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후 순조가 孝明世子에게 代理聽政을 시킬 때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였다.⁴⁴⁾ 신하가 올린 啓目과 祭文에 대한 國왕의 관부를 각각 ‘啓依允’과 ‘奉教敬依’로 적는 관행은 조선후기 내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甲午更張 이후로 官制가 바뀌면서 관부의 형식도 변화하여 ‘啓依允’은 ‘奉旨依允’ 또는 ‘奉旨依奏’로, ‘奉教敬依’는 ‘奉旨敬依’로 바뀌었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본 ‘奉教敬依’와 ‘啓依允’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奉教敬依’와 ‘啓依允’의 변화

태조·정종	태종 이후	조선후기	갑오경장 이후
王旨依申	奉教依允	奉教依允	奉旨依允
	奉教敬依	奉教敬依	奉旨敬依
	啓依允	啓依允	奉旨依奏
	宣旨依允		
	御書依允		

이러한 관부들은 시기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어휘를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관부의 기록이라는

43)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12월 18일, “議政府王世孫聽政時, 依丁酉年例追節目:一, 陵殿祭文, 啓則奉教敬依長銜, 達則奉令敬依長銜; 廟墓祭文, 啓則奉教可長銜, 達則奉令可長銜. 一, 啓目稱申目, 而有啓目何如, 則啓依允短銜, 有申目何如, 則達依準短銜; 無啓目何如, 則啓依所啓施行, 無申目何如, 則達依所達施行. ……”

44)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2월 9일, “議政府王世子聽政節目別單:一, 聽政節目, 依傳教, 以乙未事例磨鍊爲白齊. ……一, 陵殿祭文, 啓則奉教敬依長銜, 達則奉令敬依長銜, 廟墓祭文, 啓則奉教可長銜, 達則奉令可長銜爲白齊. 一, 啓目稱申目, 而有啓目何如, 則啓依允短銜, 有申目何如, 則達依準短銜, 無啓目何如, 則啓依所啓施行, 無申目何如, 則達依所達施行爲白齊. ……”

45)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1월 24일, “宮內大臣奏: ‘任景慕宮令金益慶, 仁陵令李潤相, 景陵令李範八.’ 奉旨: ‘依允.’”;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10월 17일, “議政府贊政法部大臣韓圭高謹奏: ‘前碧潼郡守尹鎮佑有魔法食饗事審辦事, 業已拿致, 該員曾經奏任官, 故依刑律名例第二十八條之意, 謹奏.’ 奉旨: ‘依奏.’”;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10월 11일, “掌禮院卿趙秉弼謹奏: ‘陰曆十一月二十日園丘大祭香祝, 以親傳磨鍊乎? 敢奏.’ 奉旨: ‘敬依.’”

점과 그 관부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의미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啓’는 ‘奉敎’나 ‘奉旨’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의 ‘啓’는 ‘啓下’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啓判付가 나오게 되는 과정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적는 啓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다. 국왕의 관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어휘인 ‘啓’ 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⁴⁶⁾ 이제 ‘啓’와 ‘親啓’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啓’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관부에 적는 ‘啓’ 자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이 상달문서에 대한 관부에 奉敎 대신 啓를 사용하라고 한 것은 啓가 관부와 관련되는 어휘라는 의미이다. 그 때의 啓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奉敎와 유사한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奉敎依尤과 啓依尤이라는 관부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전기부터 甲午更張 이전까지 내내 같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둘의 의미상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둘째, 세조가 啓字印을 만들어 재가하는 문서에 찍도록 한 것은 啓字印에 새겨진 啓의 의미가 국왕의 재가 또는 관부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啓字印은 御寶처럼 소중하게 여겼으며,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는 것은 內官이 담당하였다.⁴⁷⁾ 啓字印에 새겨진 啓의 의미가 국왕의 재가 또는 관부를 나타낸다면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적는 啓의 의미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관부 안에 찍힌 啓字印의 啓와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적는 啓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29년(1596) 8월에 선조가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선언한 뒤 啓字印을 감추어두고서 상달문서를 관부하지 않아 신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기사가 한 달 넘게 기록되어 있다. 그때 선조가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는 대신 署押을 하거나 啓字를 직접 써서 내려주겠다고 하였다.⁴⁸⁾ 그러자 大臣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선조에게 명을 철회해 주기를 청하였다.

46) 좁은 의미의 判付 서두에 적는 ‘啓’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관찬사료의 번역사업 및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啓’ 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점과 번역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啓’ 자의 의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다 보니, 현재 관부의 서두에 적는 ‘啓’ 자에 대한 표점과 번역도 ‘아뢰다.’로 해석한 경우와 ‘啓下하다.’로 해석한 경우가 뒤섞여 있다. 고문헌을 전공한 연구자로는 명경일이 ‘啓’ 자 자체만으로는 ‘啓下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관부의 서두에 적는 ‘啓’ 자를 ‘아뢰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경일, 『조선 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208쪽 주 45).

47) 사료에는 啓字印을 御寶처럼 소중하게 여긴 기사와 啓字印을 잘못 찍은 內官을 처벌한 기사가 자주 보인다. 『선조실록』 29년 윤8월 12일(병자), “大臣【座目見上。】啓曰：‘……凡啓字，與御寶一般，乃是人君之器，頃刻不可置非其所。假使東宮册封後，參決之事，而豈敢用啓字乎!’”；『승정원일기』 영조 4년 10월 23일, “上曰：‘此事，固可駭矣。以上言文書事言之，渠敢偽造啓字，偽爲堂郎名，偽踏印信，偽書判付，天下寧復有此等事耶！欲爲臬示以爲懲一儆百之道，而久而思之，偽踏啓字，與御寶偽造，無異矣。御寶偽造，自有當律，則王者用法，不可低昂，故方移送待其回啓矣。’”；『승정원일기』 효종 10년 윤3월 5일, “傳于金壽恒曰：‘長番內官金成輝，誤踏啓字，殊甚非矣。從重推考。’”；『승정원일기』 현종 1년 7월 12일, “以備忘記，傳于南龍翼曰：‘長番內官林成翼，當爲莫重公事，誤踏啓字，極爲非矣。行公從重推考。’”

48) 『선조실록』 29년 윤8월 13일(정축), “委官三啓，答曰：‘處事有權宜，何用固滯之！啓字不可踏，着押乃可爲。’”；『선조실록』 29년 윤8월 16일(경진), “大臣再啓曰：‘推案無啓字，不可成案，此事甚明。況臺諫方爲論請，臣等雖欲承命推鞠，其路無由。惶悶之中，更爲惶悶。伏望深思國家大計，踏下啓字。’答曰：‘啓字決不可踏，着押可矣。如是迫之，然則每張，欲手書啓字以下。’”

⑥ 大臣이 아뢰었다.

“……大內로 들여보내 주상께서 열람하신 문서에는 반드시 啓字印을 찍어 내려주면 승정원에서 또 그 문서의 말미에 「어느 관사에 내려주라.」라고 재가를 받았다. ……[啓下某司云云]라고 판부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주상께서 직접 啓字를 적는다면 이것은 승정원의 임무인데 주상께서 대신 행하는 셈이니, 후세에 누가 또 주상께서 열람하신 문서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주상께서는 또 署押을 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啓字印을 찍어서 내려주었는데, 이 獄案에만 署押을 한다면 예전의 규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격례이니 후세에 또 누가 주상의 署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신들이 이른바 獄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⁴⁹⁾

⑥의 사례를 통해 그 당시 상달문서에 대해 관부하는 절차를 일부나마 알 수가 있다. 국왕이 상달문서를 읽어보고 啓字印을 찍어서 내려주면 승정원이 문서의 말미에 ‘啓下○○’이라고 적었다. ○○은 해당 문서를 내려줄 관사명이다. 이처럼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啓字를 적는 것은 승정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선조가 啓字를 적어서 내려주더라도 그것을 선조가 적은 것인지 승정원이 적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啓字를 누가 적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국왕의 관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啓를 ‘啓下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⑥의 사례에도 나오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관부에 ‘啓下○○’이라고 적은 것에서 유래하였다. ‘啓下○○’에서 啓는 다른 啓判付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관부를 나타내고 그 이하는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이다. 따라서 ‘啓下○○’을 표점하면 〈啓, “下○○.”〉이 된다. 이때의 啓는 ‘아뢰다.’의 의미가 될 수 없다. 각 도에서 올린 狀啓는 사안에 따라 備邊司나 六曹 등의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대책을 마련하여 回啓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啓下○○’ 형식으로 관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⁰⁾ 그러다보니 啓와 下를 붙여서 ‘啓下’라고 부르다가 하나의 어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啓下’의 주체는 국왕이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서 말하면 ‘啓下하다.’라고 해석하지만, 신하의 입장에서 말하면 ‘啓下받다.’라고 해석하였다.

넷째,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사료에는 啓判付를 기록할 때 서두에 ‘啓’ 1자만 적기도 하였지만, ‘啓判付’나 ‘判付啓’ 등으로 적기도 하였다. ‘啓判付’라는 어휘가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선조 30년(1597)부터로, 그 의미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啓字를 적는 관부’를 의미한다.⁵¹⁾ ‘判付啓’는 정조 5년(1781) 이후

49) 『선조실록』 29년 윤8월 18일(임오), “大臣啓曰: ‘……凡公事之入內經御覽者, 必踏啓字而下, 政院又於其尾, 判付啓下某司云云。今若御書啓字, 則是政院之任, 自上代行, 後世(雖一誰)復知已經御覽文書乎! 自上又欲着押以爲憑驗之地, 自古及今, 無論大事、小事, 皆踏啓字, 而獨於此獄案着押, 則事異前規, 而格例無據, 後世又誰知之! 臣等所謂不可成案者, 此也。……’”

50) 『新補受教輯錄』 「吏典」 〈雜令〉, “各道狀啓, 諸各司各爲回啓者, 勿爲各各入啓, 諸各司畢回啓, 粘連啓下。”; 『銀臺條例』 「附錄」 〈判付規式〉, “各道狀啓, 書‘啓下某司.’ 【隨所啓事, 下各該司, 而有‘令廟堂稟處.’ 而事屬於武府者, 下三軍府。○ 兵曹外關內各司啓下者, 只書啓字。】”

51) 『선조실록』 30년 6월 26일(을유), “忠情節度使李時言書狀: ‘……’ 啓下備邊司。回啓: ‘……’ 啓判付曰: ‘依允。既爲守令, 身帶鎖管節制等職, 法當領兵親赴, 安問門蔭與否! 不可使人代領。此事, 前日有承傳, 今此回啓辭緣, 勿爲舉行。’”; 『광해군일기』 1년 5월 8일(무자), “義禁府啓曰: ‘逆肆既死, 守直之軍, 卽當撤罷, 何如?’ 啓判付內: ‘別將、他邑軍, 使之撤還, 本縣軍, 使本官

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글자를 적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啓判付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⁵²⁾ 정조는 『승정원일기』에 啓目에 대한 判付를 적을 때 判付啓라고 적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⑦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수정한 이 『승정원일기』를 보면, 啓目에 대한 판부를 ‘답하기를[答曰]’이라고 적기도 하고 ‘전교하기를[傳曰]’이라고 적기도 하였다.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문서를 이처럼 허술하게 적었으니 너무도 놀랍다. 해당 주서에 대해서는 곧이어 처분을 내리겠다. 앞으로 계목에 대한 판부는 ‘[~하라.]’라고 판부를 받았다. [判付啓「云云爲良如教。」라고 적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라.”⁵³⁾

⑦에서 정조의 말은 『승정원일기』에 啓目에 대한 판부를 적을 때 서두에는 ‘判付啓’를 적고 말미에는 ‘爲良如教’이라고 적으라는 것이다. ‘爲良如教’은 ‘~하라고 하심’이라는 의미의 吏讀로 처결 내용이 국왕의 처결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判付啓’와 함께 어울려서 이 啓判付를 받은 승정원이 대신 기록하였음을 나타낸다. 다만 『승정원일기』에는 좁은 의미의 판부 서두를 적을 때 判付啓의 앞이나 뒤에 奉教까지 동시에 적어 ‘奉教判付啓’나 ‘判付啓奉教’라고 적은 사례가 일부 보이기도 한다.⁵⁴⁾ 이때의 판부는 啓判付가 아닌 奉教判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기록자의 실수로 보아야할지 判付啓의 의미를 ‘啓字判付’라고 확대하여 해석해야 할지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判付啓는 啓判付 또는 啓字判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啓判付의 서두에 적는 啓는 ‘재가하다.’, ‘판부하다.’의 의미이다. 啓 자의 사전적 의미에는 ‘啓下’의 의미가 없지만, 조선시대에 ‘啓’ 자가 판부와 관련하여 사용되면서 ‘啓下’의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부와 관련된 ‘啓’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아뢰다.’로 해석할 경우에는 ‘啓下’, ‘啓判付’, ‘判付啓’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곤란해진다.

다음으로 親啓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親啓란 啓判付의 서두에 ‘親啓’라고 적는 것을 가리킨다. 親啓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나는 親啓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親’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사료에 보이는 親啓의 의미는 대부분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아뢰다.’의 의미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縣監率領，限出葬，仍爲守護。”; 『승정원일기』 인조 4년 11월 18일, “禁府啓曰: ‘李時吉罪犯, 係干贓汚, 上裁.’ 啓判付內: ‘削奪官爵, 邊遠定配, 義州定配.’” 『신조실록』에는 ‘啓判付’를 ‘啓判下’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신조실록』 39년 12월 9일(계묘), “禮曹啓曰: ‘……’ 啓判下: ‘士族、庶孽之分截然。我國之所以維持綱紀者, 以此也。自變亂以後, 倫紀頹敗, 名分混淆。庶孽之人, 何得以稱氏! 且若稱氏, 則其將着圖書乎! 若着圖書, 則是與士族, 比肩竝袂。自此而越分陵僭之風, 不可醫矣。更爲法例, 詳參施行.’” ○ 禮曹啓曰: ‘……’ 啓判下: ‘自前凡呈上言時, 士族則着圖書; 庶孽則稱召史、着手寸, 自來然也。然依啓議處.’”

52) 『승정원일기』 정조 5년 5월 3일, “漢城府啓曰: ‘粘。長湍居張禮山訟, 公決後狀聞之意, 分付道臣, 何如?’ 判付啓: ‘依允.’”

53) 『일성록』 정조 6년 2월 14일 敕曰: “觀此修正日記, 凡於啓目判付, 或以答曰書之, 或以傳曰書之, 莫重文書如是疏漏, 極可駭然。當該注書, 從當處分。此後啓目判付, 則書以「判付啓云云爲良如教。」云云事, 各別申飭。”

54) 『승정원일기』 정조 5년 윤5월 19일, “禁府照曰: ‘兵曹佐郎李秀夏矣, 宿衛清禁, 何等至重, 而身爲該郎, 常時不能嚴飭, 致使曹屬作此無前之變怪, 事極驚駭。以此照律罪, 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私罪.’ 判付啓奉教: ‘依允。本律良中, 功議區別各減一等爲有矣, 以公罪勸放爲良如教.’”; 『승정원일기』 정조 5년 윤5월 26일, “又禁府照曰: ‘內弓房次知中官李元碩、弓房內官洪益浩·金聖欽等矣, 竝令該府處之罪, 各杖一百收贖, 奪告身三等, 私罪.’ 奉教判付啓: ‘竝功減一等爲良如教.’”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43건의 親啓가 검색되는데, 그중 성종대가 70건, 중종대가 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親啓는 두 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각 관사가 사무를 처리할 때 국왕에게 누가 직접 아뢰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무를 구두로 아뢰어 처리하느냐 문서로 아뢰어 처리하느냐의 문제였다. 전자의 경우로 말하면, 각 관사의 해당 관원이 직접 아뢰는 방식과 승지나 환관이 대신 아뢰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점차 승정원이 왕명 및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면서 승지가 직접 아뢰는 방식과 환관이 대신 아뢰는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좁혀졌다. ‘承旨親啓’라는 어휘도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되는 총 31건 중 성종대가 9건, 중종대가 15건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⁵⁵⁾

후자의 경우로 말하면, 이 시기는 신하들이 국왕에게 구두로 아뢰는 방식에서 문서로 아뢰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던 시기로, 이후 啓辭, 書啓, 草記 등 새로운 문서가 등장하는 시기의 직전이기도 하였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親啓는 국왕의 판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親啓를 判付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로는 성종 14년(1483)에 ‘承旨가 직접 계하 받은 사안은 啓字印을 찍지 않고 承旨의 이름만 적고 判下한다.’라고 한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親啓는 ‘승지가 직접 아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親啓가 확실히 판부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선조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⁵⁷⁾

⑧ 주상이 別殿에 나아와서 啓覆을 행하였다. ……주상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承旨가 승정원에 나가서 判付를 고치되, ‘承旨가 ○월 ○일에 「직접 계하를 받았다. [親啓] 또는 「직접 하교를 받았다.[親奉教]’라고 적고, 인장을 찍는 곳에 小啓字印을 찍으라. 이 문서는 義禁府에 내려줄 것이니, 義禁府에서 당연히 행할 것이다.”⁵⁸⁾

⑨ 주상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親啓判付는 傳旨를 작성해서 들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刑曹에서 거행하는 것은 臺諫의 停啓를 기다렸다가 거행한다고 하더라도, 臺諫啓辭의 舉行條件에 대해 모두 ‘啓下한 뒤에 傳旨를 작성해서 들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親啓判付를 休紙에 적고 원래의 啓目에 적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르게 처리한 것이다. 먼저 원래의 계목에 친계판부를 작성해서 나에게 보고하고 나중에 대간이 停啓하고 나면 거행하라.”⁵⁹⁾

55) 명경일은 ‘啓’ 자에 ‘啓下’의 의미는 없고 ‘아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承旨親啓’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承旨親啓’의 ‘親啓’와 親啓判付의 ‘親啓’를 동일한 의미로 보아 둘 다 ‘승지가 친히 아뢰다.’로 이해하였다. 명경일, 「조선 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213~219쪽.

56) 草記는 명종 중반에서 선조 초반, 啓辭는 중종 15년 이후, 書啓는 명종 중반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강욱,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의 전면적 考察」 311~312쪽, 「啓辭에 대한 考察」 129~131쪽, 「書啓에 대한 考察」, 15~17쪽.

57) 『성종실록』 14년 12월 19일(무인), “上御宣政殿, 都承旨金礪石啓事, 仍啓曰: ‘凡承旨親啓事, 則不印啓字, 只署承旨之名, 而判下。’”

58) 『선조실록』 28년 2월 18일(신유), “上御別殿, 啓覆. ……上曰: ‘然承旨出政院, 改其判付, 承旨, 某月某日, 親啓、奉教, 某處踏小啓字. 此公事, 當下義禁府, 義禁府自當爲之。’”

59)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1월 28일, “傳曰: ‘親啓判付, 與傳旨有異. 該曹舉行, 則雖待停啓, 凡臺啓舉條, 皆以啓下後, 只不

⑩ 주상이 말하였다.

“내가 직접 참석하여 啓覆을 행할 때의 문서에 대한 관부를 반드시 ‘親啓’라고 적는 것은 사안을 중시해서이다. 承旨들이 문서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어전에서 관부한 것은 내가 직접 참석하여 啓覆을 행할 때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지들이 문서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의 문서에 대한 관부는 각 해당 관사에 啓下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啓依允’이나 ‘奉教可’라고 적고 職銜을 적을 경우 啓覆할 때의 문서에 관부를 적는 예에 따라 親啓라고 적고 이를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라.”⁶⁰⁾

⑧은 義禁府의 啓覆 문서에 관부하는 형식을 밝힌 사례이다. 관부는 승지명, 관부 시기, ‘親啓’ 또는 ‘親奉教’를 적고 啓字印을 찍는다고 하였다. 이때의 ‘親啓奉教’를 ‘승지가 직접 아뢰어 하교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⑨와 ⑩의 사례에서 啓覆할 때의 문서에 대한 관부를 ‘親啓’라고 적으며 그러한 전례가 그전부터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⑧의 啓覆 문서에 적은 親啓도 ‘승지가 직접 계하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⑨의 전교가 나오게 된 과정은 이렇다. 전날 3차 啓覆을 행할 때 영조가 사형수 중 崔始大·朴之先·哲周에 대해 사형을 감하여 定配하라고 명하자, 臺諫이 영조에게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論劾啓辭를 올렸다. 대간이 반대하면 왕명이라도 집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승정원이 ‘사형을 감하여 定配하라.’는 영조의 관부를 작성해서 들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⑨에서 말한 親啓判付란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자 영조가 옛 규례에도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하였다가, 승정원의 보고를 받고 나서 ⑨의 전교를 내린 것이다. 영조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형을 감하여 定配하라.’고 관부한 것을 영조가 거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부를 계목에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종이에 작성한 것은 일처리를 잘못된 것이니, 원래의 계목에 親啓判付를 적어서 재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때의 親啓判付란 ⑩의 사례에서도 말한 것처럼 관부의 서두에 ‘親啓’라고 적는 관부를 가리킨다. 이 사례를 통해 啓覆할 때의 문서에는 관부의 서두에 ‘親啓’라고 적던 관례가 그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⑩의 사례는 啓覆할 때의 문서에만 적용하던 ‘親啓判付’를 승지들이 문서를 가지고 입시하여 직접 관부를 받을 때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즉 승지들이 문서를 가지고 입시하여 국왕의 관부를 받으면 ‘啓下○○’으로 관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親啓依允’이나 ‘親奉教可’처럼 관부의 서두에 적는 啓와 奉教의 앞에 ‘親’자를 적도록 한 것이다. 영조가 정식으로 삼도록 한 이후로 『승정원일기』에는 실제로 관부의 서두에 ‘親啓’로 적은 사례가 보이고 입시하였을 때의 문서의 관부를 ‘親啓’라고 적는 것은 옛 규례라고 말할 기사도 보인다.⁶¹⁾ 『은대편고』에서는 승지가 입시하여 관부를 적을 때에는 ‘啓下○○’으로 관부하는 狀啓도 ‘親啓下’로

捧傳旨, 則親啓判付, 書於休紙, 不書原啓日, 事涉殊常. 先爲書啓後, 舉行, 則待其停啓, 可也.”

60)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10일, “上曰: ‘親臨啓覆時文書判付, 必書以親啓者, 所以重事體也. 諸承旨持公事入侍時, 榻前判付, 與親臨啓覆無異. 此後持公事入侍時文書判付, 啓下各該司之外, 啓依允、奉教可書銜者, 依啓覆文書例, 以親啓書之, 定式施行, 可也.’”

61)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2월 25일, “上曰: ‘此, 刑曹日次乎?’ 泰溫曰: ‘此, 罪人朴時泰事也.’ 上曰: ‘書之.’ 親啓: ‘除尋常, 各別嚴刑, 期於直招爲良如教.’ 泰溫書訖.”;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1월 18일, “上曰: ‘入侍時書判付, 則書以親啓者,

判付한다고 하였다.⁶²⁾

⑪ 徐有慶 등이 兩司의 推考緘辭를 나누어 읽었다. 주상이 말하였다.

“그중 별도로 두었던 것은 모두 ‘용서해 주라.[分揀]’라고 적고, 기타 議功과 議親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모두 ‘의공을 적용하여 1등급을 감해 주라.[功減一等]’라고 판부를 써서 내려주라.” 주상이 말하였다.

“관부할 때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직접 하교를 받았다.[親奉教依允]’라고 적는 것이 규례인가?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직접 계하를 받았다.[親啓依允]’라고 적는 것이 규례인가? 승지는 나가서 물어본 뒤에 판부를 적으라.”

이의필(李義弼)이 명을 받고 나가서 물어본 뒤에 돌아와서 아뢰었다.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직접 하교를 받았다.[親奉教依允]’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찌 推考緘辭에 대한 判付를 모두 잘못 적었으니, 승지가 물러난 뒤에 모두 고쳐 적으라.”

서유경 등이 판부를 분담하여 적은 뒤 모두 啓字印을 찍어서 내려주었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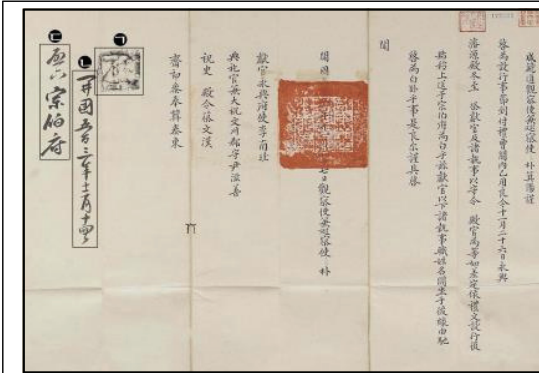
⑪의 사례는 승지들이 문서를 가지고 誠正閣에 입사하였을 때의 일이다. 정조가 승지 이의필에게 推考緘辭에 대한 판부를 ‘親奉教依允’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親啓依允’이라고 적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한 뒤에 ‘親奉教依允’으로 적도록 하였다. 앞에서 啓와 奉教의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의 親啓와 親奉教도 유사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親啓와 親奉教에서 ‘親’자의 주체는 승지가 되어야 하고 그 해석도 ‘승지가 직접 계하를 받았다.’와 ‘승지가 직접 하교를 받았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월일 아래에 ‘親’자를 적을 때에는 약간 작은 글씨로 적었는데, 이것도 ‘親’의 주체가 국왕이 아니라 승지라는 것을 말해 준다.⁶⁴⁾

即古例也。’ 上仍命承旨書判付訖。”; 『승정원일기』 정조 6년 5월 24일, “賑恤廳啓曰: ‘……’ 親啓: ‘全州判官趙長鎮之自備殺數, 既至千包, 且其賑政勤勞最著云爾, 則合有嘉獎之典。而論賞次第, 加資、表裏, 雖曰爲最, 此等守令, 更試盤錯, 無所不可, 準職除授。泰仁閣良李國茂、李千孫等, 道啓, 雖不請賞, 法典內五十石, 猶給帖加是隱則, 況且倍是之數乎! 令該曹考例草記論賞爲良如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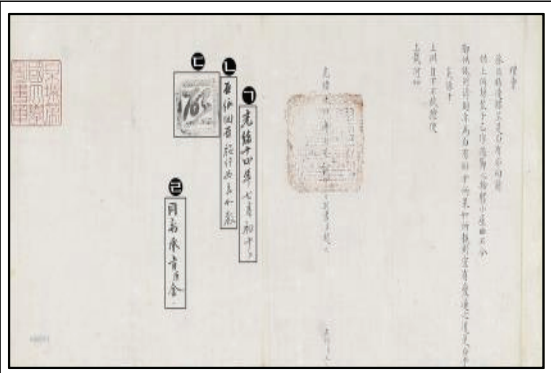
62) 『銀臺便攷』 『通攷』 〈承旨〉, “凡入侍, 有判付之命, 則啓下各該司狀啓, 以親啓下判付。”; 『승정원일기』 정조 7년 3월 16일, “命誼讀公事訖。上曰: ‘凡於承旨持公事入侍之時, 誼讀, 即書判付, 例也。而近來承旨, 不問院務, 讀之而已, 不書判付。此公事, 則竝爲判付曰『親啓下云云。』可也。’”;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2월 19일, “以忠清監司林濟遠啓本, 全義縣殺獄罪人黃大潤獄情查覈馳啓事, 判付內親啓: ‘下刑曹爲旆。一獄而致兩命云乙仍于, 不計所籲之其然不然, 拔例嚴飭, 星火行查是如乎。觀此查啓自引, 而以臣查臣, 備陳獄情類末如畫說出, 驟看孰不以道臣之說爲然哉! 然而要囚貴在服念, 求疑於無疑, 安知無別般疑端, 出於初不起疑之處是隱乙噫! 諺不云乎! 談甘之家, 醬不甘甘。黃哥之可以傳生, 若由於道伯之善於辭令, 而徑從道啓決處, 則其在重三尺之道, 能無一毫未盡! 更令道臣嚴飭推官, 另具意見, 加訊得情啓聞事, 分付爲良如教。’”;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4월 8일, “又教賤臣曰: ‘近日入侍公事, 皆果入錄於日記中否?’ 賤臣曰: ‘親啓下公事, 盡爲入錄矣。’ 上曰: ‘持公事時啓下公事, 皆可錄之, 何必親啓下公事而已乎! 此後, 則持公事入侍時啓下公事, 無論巨細, 盡書於當日日記, 可也。’”

63)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1월 19일, “有慶等分讀兩司推緘。上曰: ‘其中別置者, 皆書分揀, 而其他有功議者, 皆皆以功減一等書下判付, 可也。’ 上曰: ‘判付之例, 以『親奉教依允。』書之乎? 以『親啓依允。』書之乎? 承旨出問後, 書之, 可也。’ 義弼承命出問後, 還奏曰: ‘以『親奉教依允。』書之云矣。’ 上曰: ‘然, 則昨日推緘判付, 皆誤書, 承旨退出後, 皆改書, 可也。’ 有慶等分書判付, 竝踏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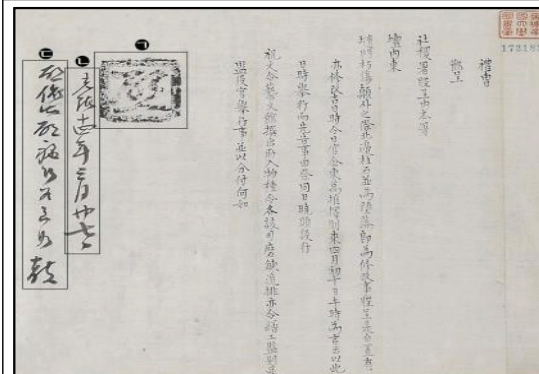
64) 『銀臺便攷』 『吏房攷』 〈承旨〉, “入侍公事判付, 則年月下, 必書親字。【差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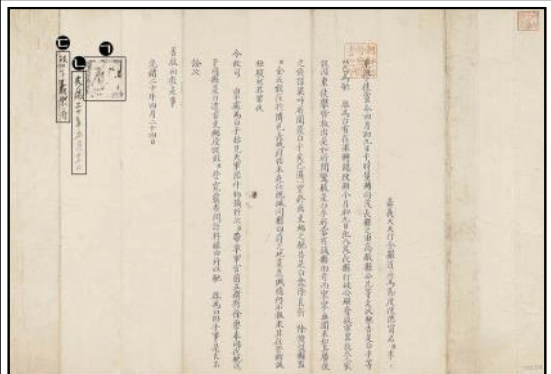
[사진 5]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계본-咸鏡道觀察使朴箕陽啓本(2책 奎27631) 외방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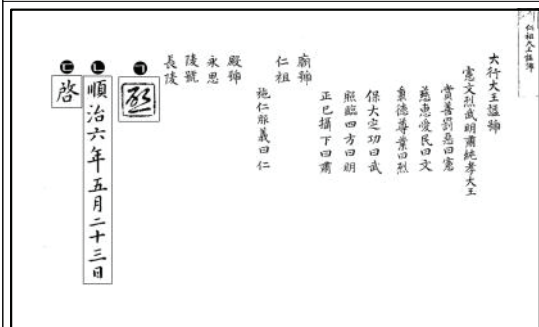
[사진 6]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계목-禮曹啓目(2책-93292) 계목-환판부



[사진 7]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草記-禮曹草記(2책 172182) 무계목단지



[사진 8]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狀啓-全羅道兵馬節度使李狀啓(2책 522594)



[사진 9]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소차계장류-단지-1649년 인조 시호망단지(諡號望單子)



[사진 10]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계문-啓文別單禮曹啓文(2책-93238)

이제는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 등을 통해서 啓判付가 적용된 문서와 그 형식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啓判부가 되어 있는 상달문서를 보기로 하겠다.

[사진-5]는 咸鏡道觀察使가 올린 啓本과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한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를 적었다.

[사진-6]은 禮曹가 올린 啓目과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判부한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를 적었다.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으로, [사진-3]을 비롯하여 다른 문서에 대한 判부와 달리 啓字印이 좁은 의미의 判부 뒤쪽에 찍혀 있다. 이러한 判부를 還判付라고 하였다. 환판부는 國왕이 判부 내용을 적어서 承政院에 내려주면 承政院이 계목의 말미에 그 내용을 적어서 들여보내 처결 내용이 적힌 왼쪽에 啓字印을 받았다.⁶⁵⁾ ㉣에는 이 계목을 入啓하여 判부를 받은 答當 承지가 밝혀져 있다.

[사진-7]은 禮曹가 올린 無啓目單子와 그에 대한 判부이다. 無啓目單子란 조선 초기의 啓目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문서로, 문서의 서두에 ‘啓目’ 2자를 기록하지 않고 말미에도 연월일 및 작성자 등을 적지 않았다.⁶⁶⁾ 判부 중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를 적었다.

[사진-8]은 全羅兵馬節度使가 올린 狀啓와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를 적었다.

[사진-9]는 禮曹가 올린 仁祖의 諡號望單子와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만 적었다. 望單子라도 후보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라서 낙점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처럼 ‘啓’ 1자만 적었다.⁶⁷⁾

[사진-10]은 禮曹가 올린 別單과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한 시기를 찍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서두에 ‘啓’ 자만 적었다. 別單을 啓判付한 사실은 『萬機要覽』과 『六典條例』의 조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⁶⁸⁾

65) 명경일, 「조선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220~225쪽.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0월 12일, “上曰: ‘……大抵拿處之律, 極爲重大, 刑推等重罪, 皆從拿處勘斷, 則其爲法意, 重且難矣. 故凡干判付, 若值入侍時, 則承旨承書, 不然, 則以一片紙, 書下判付, 令政院更爲移書於原啓目下, 入啓後, 卽踏啓字而下者, 此是還判付也. 刑人、殺人、賞人、爵人, 何等審慎, 則毫忽之間, 或有意外之慮, 故乃有還判付防奸之法, 而近日則承旨, 亦不知此箇法意, 豈不寒心乎!’” 한편 還判付에 찍는 啓字印을 미리 찍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承지가 입시한 상태에서 判부를 모두 받아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전에서 물러나와 判부를 작성하여 재가를 받았는데, 이때 입시한 자리에서 미리 啓字印을 받아두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9월 5일, “漢城府啓目: ‘……’ 判付啓: ‘依允爲旆, 判付皆有規式, 若措語, 則例爲還判付是如乎, 還判付云者, 啓字踏於判付外行之謂也. 觀此粘啓者, 先踏啓字, 只書依允之處, 承旨敢爲措辭. 大抵還判付之法意至嚴, 所以防奸之意, 則事雖微細, 有關後弊, 當該承旨爲先推考. 雖以刑曹堂上言之, 參判宜諳似此格例, 而不爲往復該房, 當該參判, 亦爲推考. 各司公事, 若有如許錯書者, 卽令政院取來釐正爲良如教.’”; 『銀臺便攷』 「刑房攷」 〈標信〉, “禁府請刑啓目中, 還判付書次, 啓字遠踏下, 則雖無下教, 依例以‘除刑推議處.’ 書出而入稟, 啓字, 若近踏無以書還判府, 則以‘何以爲之?’之意, 卽爲入稟. 【因口傳下教, 永爲定式.】”

66)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啓目式; 명경일, 「無啓目單子の 서식과 용례」, 66~78쪽.

67) 『銀臺便攷』 「禮房攷」 〈冊禮〉, “定名單子啓下時, 禮房承旨仍於賓廳, 書判付、大年號, 只書啓字. 【備三望時, 則落點判付.】”

68) 『萬機要覽』 「財用篇」 4 〈戶曹各掌事例〉 別例房, “大君、王子、公·翁主吉禮時【大君以下, 稱吉禮, 英宗御筆書下.】, 聘財以下各物目, 一從吉禮廳【例以禮曹三堂上差下, 而尙方、度支堂上及郎官各一員兼管照檢大小國婚事, 正宗丁未定式.】, 別單啓下,

이상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 啓判付가 확인된 상달문서는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5가지이다.

그 외에 현재 남아있는 문서 중 草記, 啓辭, 書啓, 上疏, 筭子에는 啓字印이 찍혀 있지 않고 문서의 말미에 비답이 적혀 있거나 비답이 별도로 작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草記, 啓辭, 書啓, 上疏, 筭子에서는 啓字判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 문서에도 啓字判付를 하였던 기록이 확인된다.⁶⁹⁾ 그러나 이들 문서에 대한 판부는 批答判付가 주된 것이고 啓字判付는 보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呈辭의 경우에는 批答判付와 啓字判付를 함께 활용하였다.

- ⑫ 大臣의 針灸呈辭·加土呈辭·掃墳呈辭에 대해 계자인을 찍어서 내려주거나 ‘안심하고 조리하라.’라는 비답을 내려주면, 낭청을 시켜서 전달하지 않고 승정원에서 직접 분부한다.⁷⁰⁾

⑫의 사례에 의하면, 大臣의 呈辭에 대해서는 啓字判付를 적용하기도 하고 批答判付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呈辭는 관원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 올리던 문서였으므로, 啓字判付를 통해 허락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되었다. 다만 呈辭 중 身病呈辭만은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렸기 때문에 啓字印을 찍게 되면 체차해 주겠다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므로 身病呈辭에 대해서는 체차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체차를 허락하지 않고 ‘안심하고 조리하라.’라는 등의 비답을 내려주었다. 身病呈辭 이외에 鍼灸呈辭와 沐浴呈辭도 자신의 신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하던 呈辭였으므로 계자인을 찍어서 내려주기도 하고 ‘안심하고 조리하라.’라는 비답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현재 呈辭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서 알 수 없으나 그 외의 다른 呈辭는 啓字判付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呈辭에 대해 啓字印을 찍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가 있다.⁷¹⁾

上言과 擊錚原情은 백성이 국왕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할 때 올리던 문서였다.⁷²⁾ 현재 남아있는 上言에는 啓字印도 찍혀 있지 않고 비답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上言을 啓字判付한 사실은 조선 초기에 申聞鼓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⁷³⁾ 『경국대전』에

磨鍊輸送。”; 『六典條例』 「戶典」 〈戶曹〉 版籍司 貢價, “元貢中, 司藥寺、司宰監、內膳寺、掌苑署供上物種及奉常寺·典牲署祭享物種不足, 則加定, 有餘, 則減貢而分排各道, 別單啓下, 移牒惠廳。”

69)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18일, “金尙憲啓曰: ‘江華看病下去內醫書啓, 踏啓字而下, 書啓時藥物, 何以爲之乎?’”; 『승정원일기』 인조 3년 7월 25일, “戶曹參判李慶涵特進官辭免上疏. 踏啓字.”; 『승정원일기』 인조 6년 3월 9일, “李貴、崔鳴吉筭子, 踏啓字下.”;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1월 3일, “文重, 以執義沈濡避嫌啓辭啓曰: ‘此避辭, 昨日筵中, 既已親達, 而踏啓字後, 當爲舉行, 故敢達.’ 上曰: ‘唯.’”; 『승정원일기』 영조 5년 8월 27일, “顯命讀吏曹工曹正郎宋性源等掃墳給由草記, 踏啓字。”

70) 『銀臺便攷』 「吏房攷」 〈呈辭〉, “大臣針灸呈辭及加土、掃墳呈辭, 踏啓字或安心調理批下, 則不以郎廳傳諭, 直爲分付。”

71) 『승정원일기』 인조 9년 5월 1일, “政院啓曰: ‘左議政三度呈辭, 踏啓字而下. 大臣呈辭, 與庶官有異, 雖或遞差, 而例有遣官措辭下諭之事, 今則直捧遞差承傳乎?’ 傳曰: ‘只遞本職.’”; 『승정원일기』 현종 8년 3월 18일, “靈豐君滄焚黃呈辭, 踏啓字, 傳曰: ‘澆奠床備給.’”;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9월 11일, “持平金文夏再度呈辭, 入啓, 踏啓字.”

72)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上言式」, 『百憲摠要』 「禮」 〈上言式〉, 『秋官志』 「考律部」 〈定制〉 申聞鼓 「上言規式」· 「申聞鼓擊錚原情規式」, 『儒胥必知』 「上言」· 「擊錚原情」에 上言과 擊錚原情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73) 『태종실록』 4년 3월 1일(임인), “司諫院劾司憲執義尹思永. 召司諫院掌務教曰: ‘司憲府近來事多遲緩. 慈恩寺僧與李薈相訟奴婢事及擊鼓啓下事, 托以各位不齊, 久不決折, 其所欲爲之事, 則謂備三員而爲之. 臺諫相規, 自古然也, 宜問其故.’ 是以劾而請罪.”; 『세종실록』 5년 9월 22일(경자), “刑曹啓: ‘丁酉年以後, 以誤決上言啓下, 而不現身訟者, 限來十月十五日, 督令現身. 其不現身者及現身後無故滿五十日不現者, 不受理.’ 命: ‘現身, 以十月晦日爲限. 今癸卯九月二十二日以後擊鼓啓下滿五十日不現

의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먼저 서울에서는 主掌官에게 신고하고 지방에서는 觀察使에게 신고하며,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신고하며, 그래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울리고 의금부의 當直廳에 상언을 바치도록 하였다.⁷⁴⁾ 국왕이 행차하는 길에 上言을 받으라고 명하면 別監이 上言을 받아서 곧바로 국왕에게 올렸고, 국왕이 상언을 승정원에 내려주어 분류해서 들여보내라고 명하면 6명의 승지가 각각 담당해야 할 사안 별로 분류하여 국왕에게 들여보냈다.⁷⁵⁾ 국왕은 승정원이 분류한 상언을 각각 六曹의 해당 관사에 啓下하여 回啓하도록 하였고, 해당 관사에서는 3일~5일 안으로 회계하였다.⁷⁶⁾

上言은 백성이 합법적으로 억울한 사정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나 擊錚은 원래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격쟁한 사람은 擊錚罪人으로 불렸다. 격쟁한 사람이 억울한 사정 등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글로 작성해서 올리는 방법과 구두로 진술하여 관리가 받아적는 방법이 있었다.⁷⁷⁾ 『儒胥必知』 「擊錚原情」에는 ① 조상의 원통한 사정을 풀기 위해 올리는 격쟁원정, ② 원통한 사정을 풀 뒤에 官爵의 회복을 위해 올리는 원정, ③ 친족의 아들로 후사를 삼기 위해 올리는 원정, ④ 山訟 때문에 올리는 원정 등 4가지 擊錚原情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백성이 직접 격쟁원정을 작성해서 올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서도 격쟁한 백성이 직접 원정을 작성해서 바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⁷⁸⁾ 죄인의 原情은 원래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두로 진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⁷⁹⁾ 그러나 격쟁 죄인의 경우에는 일반 죄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면 진술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격쟁한 사람이 원정을 작성해서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조가 격쟁죄인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아 원정을 작성하였다.⁸⁰⁾

身者, 亦勿受理。”

- 74) 『經國大典』 「刑典」 〈詬冤〉, “詬冤抑者, 京則呈主掌官, 外則呈觀察使, 猶有冤抑, 告司憲府, 又有冤抑, 則擊申聞鼓。【鼓在義禁府當直廳, 凡上言, 當直員考司憲府退狀受啓, 義禁府、司憲府所理, 不考退狀。】”
- 75) 『銀臺便攷』 「吏房攷」 〈回啓〉, “幸行時, 有捧上言之命, 則別監收捧上言, 直爲入啓, 還下政院, 有抄入之命, 然後六房各爲抄出, 稟過都令公後, 啓辭捧入。”
- 76) 『經國大典』에서는 上言에 대해 5일 안으로 回啓하도록 하였고, 『銀臺便攷』와 『六典條例』에서는 3일 안으로 回啓하도록 하였다. 『經國大典』 「刑典」 〈詬冤〉, “凡上言, 啓下五日內回啓, 如或過限, 具不即回啓辭緣以啓。”; 『銀臺便攷』 「吏房攷」 〈回啓〉, “各司回啓公事過限, 則承政院察推。【京司, 毋過三日, 外方, 毋過三十日。】”; 『六典條例』 「兵典」 〈兵曹〉 總例, “京外書啓及上言回啓, 毋過三日。”;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3월 27일, “李景仁啓曰: ‘違格上言十六丈, 請啓字爻周。’”
- 77) 한상권은 上言과 擊錚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上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직접 바쳤으나, 擊錚은 형조가 본인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아 작성한다고 하였다.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詬冤制度』(1996), 일조각, 22~27쪽.
- 78)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1월 6일, “上降輿乘輦, 至鄉校洞口。上曰: ‘有擊錚聲, 注書出去知入。’ 賤臣承命出問回奏曰: ‘安山居殺獄罪人沈師伯妻金召史, 爲其夫擊錚云矣。’ 上曰: ‘擊錚之舉, 女人親爲之乎? 抑或他人替之乎? 注書知入。’ 賤臣出問回奏曰: ‘女人置輦子於傍, 被髮露立, 手自擊錚, 而原情, 則女人之傍, 有一男子自袖中出呈矣。’”; 『승정원일기』 정조 6년 5월 23일,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今日動駕時, 西部居金召史擊錚於衛外。故取考其原情, 則以爲「其母居在社洞, 而李都正查賴趙進士家十七歲婢子, 持其上典髻髮, 過去街上, 見失於人叢中, 謂以其母奪去, 呈狀捕廳。初既白放, 旋又捉囚, 至於誣招遲晚之境。更請嚴查, 俾免橫死。」云矣。爲母訟冤, 雖係四件, 而本事既屬鄙瑣。且其原情未端, 書以「右捕廳處分。」乃以欲呈捕廳之文狀, 肆然進呈於衛外者, 究厥所爲, 誠極駭然。原情勿施, 自臣曹考律嚴處, 何如?’”
- 79) 『受教輯錄』 「刑典」 〈推斷〉, “犯罪人捧招。皆以口傳取招。勿許文字書之。【天啓乙丑承傳。】”; 『續大典』 「刑典」 〈推斷〉, “罪人原情, 口傳取招, 勿許文字書納。”
- 80)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5일, “徐有大,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 西部居金召史擊錚於衛外, 而初無原情現納。故查問其委折, 則「其夫李廷壽, 以鄭哥兩班家價事, 拘囚於京兆, 請蒙放釋。」云矣。取考該府訟案, 則李廷壽, 以黃州陸戶砲手, 懲通交河

『六典條例』에 의하면, 국왕이 都城 안에서 動駕할 때에는 把子橋, 通雲橋, 惠政橋 등 세 곳에서만 격쟁원정을 받았고,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五部를 벗어난 곳에서 격쟁하면 京畿監營에서 격쟁원정을 받았으며, 호위 구역 밖에서 격쟁하면 의금부의 羅將이 격쟁원정을 접수하고 擊錚罪人은 승정원에 구두로 전달한 뒤에 형조로 이송하였다.⁸¹⁾ 격쟁한 사람으로부터 접수한 격쟁원정은 형조에서 내용을 살펴 四件事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뒤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入啓하였다.⁸²⁾ 격쟁원정은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1건 확인하였으나 판부 부분이 결락되어 판부 방식을 알 수 없다.⁸³⁾ 다만 『일성록』 등에 수록된 격쟁원정의 사례를 보면 격쟁원정도 啓字判付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⁸⁴⁾

상언과 擊錚原情의 처리 절차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았으므로, 이들 문서에 대해서는 국왕이 비답을 내려주지는 않고 해당 관사에 啓下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언과 擊錚原情은 啓字判付를 적용하고 批答判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상언과 격쟁원정에 대해 국왕이 판부할 때 啓字判付를 하었다고 한다면, 상언과 격쟁은 奉教判付를 하거나 落點判付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啓判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조가 상언을 해당 관사에 啓下하지 않고 직접 재가한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⁸⁵⁾

이상에서 살펴본 啓判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啓判付는 좁은 의미의 판부 서두에 ‘啓’ 자를 적는 판부를 가리킨다. 이때의 ‘啓’는 ‘啓下하다.’, ‘재가하다.’, ‘판부하다.’ 등의 의미로, 신하의 입장에서는 ‘啓下 받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지가 입시하여 직접 판부를 받아 적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판부 서두에 ‘親啓’나 ‘親奉教’로 적었다. 13가지의 상달문서 중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 7가지 문서는 啓字判付를 활용하였는데, 그중 單子와 啓目は 奉教判付와 啓判付를 모두 활용하였고 나머지는 啓判付

業儒鄭道亨, 初既與之並買同居, 末乃欲爲橫奪都占, 符同洞任及部隸輩, 謂以閭家買入, 恐喝鄭哥, 至於迫逐之境, 故道亨果有呈訴京兆之事。而始訟屬耳, 不待決折, 又有此登聞之舉, 金女所爲, 誠極痛惡。猥越之罪, 自有當律, 恐不可以爲夫呼籲有所曲貸。自臣曹照法重勘, 何如?”

81)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城內動駕時, 三處【把子橋、通雲橋、惠政橋。】外, 並勿施。○ 幸行時, 部外, 則自畿營捧入原情。凡衛外擊錚時, 原情, 羅將收捧, 罪人, 言送政院後, 移送本曹捧供。四件事【……】外, 並勿施, 雖非四件事, 係是民隱, 勿請猥濫律。”

82)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12월 10일, “又以刑曹言達曰: ‘擊錚人柳泰運, 爲其父訟冤原情, 自臣曹例刑後, 所當依例捧入。而其父東茂既因大朝特教勸處, 則臣曹有不敢循例請裁。自前擊錚人, 例刑後供辭, 無請裁前置之規, 何以爲之? 敢稟。’ 令曰, “置之。”

83) 양진석, 『최승희 서울대 명예교수 소장 조선시대 고문서IV』, 도서출판 다운샘, 248~252쪽, 2007; 김경숙, 『조선후기 산訟과 上言·擊錚: 盧尙樞와 朴春魯家の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3집, 한국고문서학회, 2008.

84) 『일성록』 정조 14년 6월 9일, “[강] 命‘承旨洪義浩拿處, 待下教勸律。’ [목] 慶尙監司李祖源, 以晉州李正復擊錚原情查啓, 義浩, 以啓下刑曹, 誤書判付。刑曹, 以‘令廟堂稟處。’之意回啓, 命查判付承旨。義浩仍去刑曹粘目, 更書‘啓下備邊司。’ 出給之意, 微稟。口傳下教曰: ‘近來入啓文書及啓下文書, 拔去與改書等事, 任意爲之, 肆然入稟, 誠萬萬駭然矣。’ 仍有是命。”; 『승정원일기』 영조 1년 9월 11일, “興慶所啓: ‘本曹六七月間入啓公事判付中, 其中擊錚文書二張, 有誤踏啓字處, 故敢違矣。在前如此之時, 亦有變通還判付之規, 何以爲之乎?’ 上曰: ‘擊錚, 則原情後例爲放送矣。先朝靜攝中, 固多積滯之事, 今時則似異矣, 而近來秋曹多事而然矣。依前例踏啓字文書, 還入之, 可也。且還判付, 與新判付有異, 前踏啓字交周, 可也。’”

85)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2월 6일, “以童蒙鄭盤石上言, 傳于曹九大曰: ‘奉保夫人, 仍給三年祿, 自是常典, 其間未及受書年條, 卽爲計給於鄭哥處, 分付戶曹。’ ○ 以閑良咸興孫上言, 傳于曹九大曰: ‘尙不奉行, 極爲駭然, 令該曹申飭。’ ○ 以幼學成丙烈上言, 傳于曹九大曰: ‘觀此上言, 極爲稀異。先朝恩數之逾越, 卽予仰觀, 此人之至今生存, 亦云異事。尊高年之外, 借以實職之銜, 實合追述之義也。後日政, 卽爲擬望事, 分付兵曹。’ ○ 以幼學李輝壁上言, 傳于曹九大曰: ‘雖非回啓之事, 兵判知之。’ ○ 以幼學李齊白上言, 傳于曹九大曰: ‘令道伯問于本官狀聞事, 下諭。此上言, 下送。’”

를 활용하였다. 呈辭는 啓字判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身病呈辭, 沐浴呈辭, 鍼灸呈辭 등은 批答判付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3. 落點判付

落點判付는 國왕이 신민의 상달문서를 관부할 때 좁은 의미의 관부에 ‘落點’ 2자를 적는 관부를 가리킨다. 落點이란 상달문서에 열거된 여러 개의 후보 중에서 선택한 곳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落點은 관직에 임명할 사람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고를 때 및 시험의 제목이나 규정 등을 결정할 때에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國왕이 상달문서에 낙점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관부에 ‘落點’ 2자를 적었다.

『高麗史』에서는 시험 제목을 결정할 때 國왕이 낙점한 사례가 보인다.⁸⁶⁾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때부터 관직에 임명할 때 및 諡號를 정할 때 후보 중에서 낙점하여 결정한 사례가 보인다.⁸⁷⁾ 관직에 임명할 후보자를 3명씩 뽑아 올려 그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한 사례도 태종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⁸⁸⁾

落點 및 落點判付가 가장 많이 활용된 상달문서는 單子였다. 單子是 신하나 관사가 정해진 형식에 따라 人名 또는 物名 등을 벌여 적거나 보고사항을 요점만 간략하게 적어서 國왕에게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로,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특히 人名이나 物名 등을 열거하여 작성해서 國왕의 낙점을 받는 單子를 望單子라고 하였는데, 落點判付는 우선 이러한 望單子에 활용되었다.

① 都承旨 李彝章이 아뢰었다.

“신이 淮陽府使 望單子를 보니, 황색 찌지를 붙이고 小啓字印을 찍었습니다. 수령은 巡將이나 監軍과는 경중이 현격히 다르니, 이 望單子에는 낙점을 해서 내려주어야 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李彝章이 아뢰었다.

“연월만 적고 判付를 적지 않는다면 어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상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하교하였다.

86) 『高麗史』 「志」 〈選舉〉, “試前日午後, 貢舉具三場題脚於狀, 詣闕, 實封進呈。王親自拆封, 各於題上落點, 封押而出。”

87) 『태종실록』 5년 2월 9일(을해), “吏曹判書李稷上疏論銓選之法。疏略曰: ‘……願自今, 京外大小官所薦人材, 類分職品, 開寫成冊, 每當銓注, 隨品啓聞, 受點差除, 或三年或五年, 待人材作成, 更令薦舉, 永爲恒規。……’ 允之。”; 『태종실록』 5년 3월 10일(을사), “立兵曹保舉之法。兵曹請: ‘武官保舉, 京中東班六品、西班四品以上, 各舉三品以下武才有能者, 不拘多小, 年甲、本貫、父職名, 具呈本曹。外方各官守令, 如京中例報監司, 轉呈本曹。曹與三軍府考驗, 錄名于籍, 甲士有關, 受點敘用, 如有不稱者, 罪及舉主。’ 從之。”; 『태종실록』 8년 4월 29일(정미), “罷吏曹正郎朴冠、佐郎柳漢職。吏曹議充平君李朝諡號以進, 皆惡名, 且逼葬期, 故不落點。上令司憲府劾其遲緩之罪而罷之。”

88) 『태종실록』 8년 8월 18일(계사), “流前判事朴有孫于藍浦。別侍衛牌頭魏種得罪, 兵曹改望三人, 有孫爲首, 黃早兩名在第三, 上點早雨而用之。有孫至知中事黃喜家, 怒曰: ‘牌頭望狀, 上親見而落點歟? 上如知之, 豈肯落點於終末人乎!’ 喜具以啓, 且曰: ‘臣久在近密, 誠畏人議。今受辱於有孫, 請退歸私第。’ 上命司憲府劾有孫。”; 『세종실록』 24년 1월 11일(계유), “上曰: ‘銓曹擬掌令, 本非只望一人, 必備望三人, 受子落點, 豈能期其某之必爲乎!’”; 『세종실록』 24년 1월 15일(정축), “河演上言曰: ‘……故衆議僉同, 列於三望, 乃蒙落點。’”

“전에도 이렇게 한 전례가 있었다.”

洪鳳漢이 아뢰었다.

“그렇다면 연월 아래에 ‘落點’이라고 적어서 판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상이 말하였다.

“그것이 좋겠다.”⁸⁹⁾

② 卜相單子是 낙점을 받아 계하 받은 뒤에 大年號와 落點判付를 적어 吏曹郎廳을 불러서 내준다.⁹⁰⁾

①은 영조가 洪鳳漢의 건의를 받아들여 淮陽府使 望單子에 落點判付를 한 사례이다. 巡將과 監軍은 병조가 매일 각각의 망단자를 올려 국왕의 낙점을 받은 뒤 巡將牌와 監軍牌를 주어 都城 안팎을 순찰하게 하던 사람들이었다.⁹¹⁾ 이때 영조가 이들 망단자에 落點判付를 하지 않고 황색 찌지를 붙이고 小啓字印을 찍어 내려주자, 洪鳳漢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라고 만류하였으나 영조가 철회하지 않았다.⁹²⁾ 그런데 영조가 淮陽府使 望單子도 똑같이 처결하였다가, 李彝章과 洪鳳漢의 지적을 받아들여 望單子에 落點判付를 한 것이다. ①에서는 ‘落點’ 2자를 연월 아래에 적는다고 하였으나, 『승정원일기』 정조 때의 기사에는 연월 아래에 낙점 2자를 적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승지들의 말이 보이고, 『銀臺條例』에서는 줄을 바꾸어 1자를 높여서 ‘落點’ 2자를 적는다고 하였다.⁹³⁾

②는 卜相單子에도 落點判付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연호를 제외한 ‘落點’ 2자가 좁은 의미의 판부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卜相單子란 현임 議政들이 새로운 議政으로 적합한 사람을 의논하여 그 명단을 적어 올리던 單子이다.⁹⁴⁾ 이 卜相單子에 국왕이 낙점하면 당사자를 議政에 임명하였다. 大提學에 적합한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文衡會圈을 행한 뒤 명단을 적어 올려 낙점을 받은 경우에도 卜相單子와 마찬가지로

89)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5월 29일, “都承旨李彝章曰: ‘臣見淮陽府使望單子, 付黃簽, 踏小啓字. 牧民之官, 與巡監軍輕重又殊, 此, 則不可不點下矣.’ 上曰: ‘是無妨矣.’ 彝章曰: ‘只書年月而不得判付, 豈不難處乎!’ 上厲聲下教曰: ‘前亦有此例矣.’ 鳳漢曰: ‘然則年月下, 以落點判付, 何如?’ 上曰: ‘此好矣.’ ”

90) 『銀臺便攷』 「吏房攷」 〈卜相〉, “卜相單子, 受點啓下後, 書大年號、落點判付, 招吏郎出給.”

91) 『經國大典』 「兵典」 〈行巡〉, “都城內外行巡, 本曹, 以出直軍士【忠義衛、忠贊衛、忠順衛、族親衛、內禁衛外, 五衛各一部.】, 分二所, 差定行巡. 又受點巡將及監軍【巡將, 則以中樞府知事以下僉知以上望差, 不足, 則以行職堂上官望差, 各運領官, 則以上·大護軍、護軍差之, 不足, 則以別侍衛六品以上差之. ○ 監軍, 則以宣傳官、本曹·都摠府堂下官望差.】、出入番將, 詣闕肅拜, 納牌受牌於大內. 各運領官所受牌, 巡將都受分授.”; 『銀臺便攷』 「兵房攷」 〈巡將監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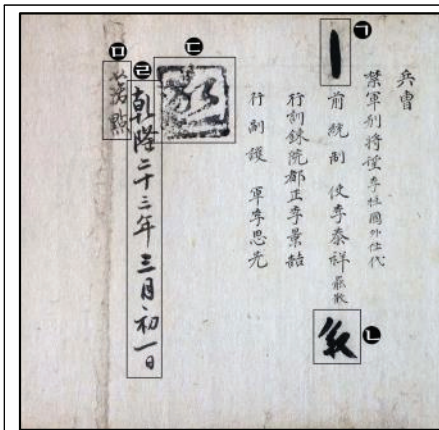
92)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5월 26일, “鳳漢曰: ‘俄聞兵房承旨所傳, 巡監軍單子, 自昨付黃簽踏小啓字下之. 自前亦或有此例, 而若是偶然之事則已. 不然, 則如此至重之事, 何若是處分乎! 臣等只欲溘然無知而已矣, 敢請選納.’ 上曰: ‘此事, 有何關係乎! 彼承旨之傳, 可謂勃若矣. 此, 乃東宮所當爲之事也. 晚、鳳漢累陳其不然.’ ” 望單子에 落點을 하지 않고 啓字印을 찍어 내려준 계기는 현종이 눈병 때문에 망단자에 낙점 표시를 할 수 없어서 시작되었으며, 눈병이 낫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종실록』 1년 2월 8일(계사), “時, 上眼患甚重, 不能執筆落點付標於望單子, 踏啓字以下以代落點. 上候向歇後, 亦久用此規.”

9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2월 28일, “李晚秀啓曰: ‘同副承旨申鳳朝今日入侍, 巡將望單子判付, 書以三行, 落點二字, 連書於年月日之下, 雖緣生疎, 事甚未安. 臣等忝居右僚, 新進下位, 不能指導, 有此做錯, 惶恐待罪之意, 敢啓.’ ”; 『銀臺條例』 「附錄」 〈判付規式〉, “有落點者, 書落點. 【落點, 高一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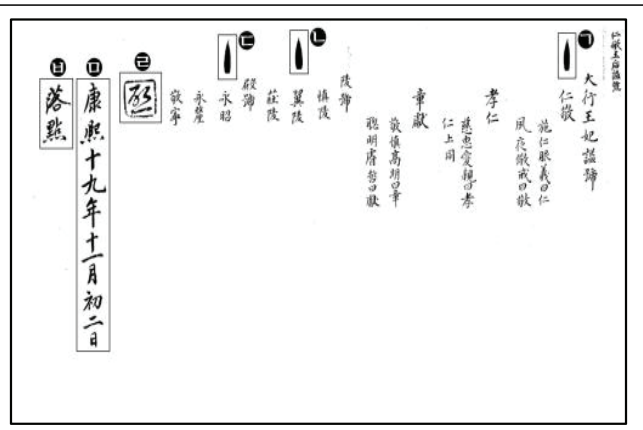
94) 『銀臺便攷』 「吏房攷」 〈卜相〉.

지로 大年號와 落點判付를 적었다.⁹⁵⁾

[사진-11]은 兵曹가 올린 禁軍別將의 望單子 및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國왕이 3명의 禁軍別將 후보자 중 첫 번째 후보자의 성명 위에 굵은 줄을 그어 낙점을 표시한 것이다. ㉡은 낙점한 李泰祥을 사면하여 임용하라는 의미에서 ‘敍’ 자를 적은 것이다. 낙점 받은 사람이 당시에 파직의 처벌을 받은 상태이면 國왕이 사면하여 임용하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 아래에 ‘敍’ 자를 써서 내려주었다. 낙점을 받은 李泰祥이 당시에 파직의 처벌을 받아 관직에 임명될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면하여 임용하라는 의미에서 ‘敍’ 자를 써서 내려주었던 것이다.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찍은 啓字印이다. ㉣은 判부 시기를 적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落點’ 2자를 적었다.



[사진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영조대왕』 특별전 도록 兵曹望單子 77쪽.



[사진 12]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1680년 인경왕후(仁敬王后)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사진-12]는 禮曹가 올린 숙종의 비인 仁敬王后의 諡號·陵號·殿號望單子 및 그에 대한 判부이다. 判부 중 ㉠은 仁敬王后의 諡號로 추천한 仁敬, 孝仁, 掌憲 3개의 후보 중 첫 번째 후보인 仁敬에 낙점하였다는 표시이다. ㉡은 仁敬王后의 陵號로 추천한 慎陵, 翼陵, 莊陵 3개의 후보 중 두 번째 후보인 翼陵에 낙점하였다는 표시이다. ㉢은 仁敬王后의 殿號로 추천한 永昭殿, 永釐殿, 敬寧殿 중 첫 번째 후보인 永昭殿에 낙점하였다는 표시이다. ㉣은 國왕의 재가를 나타내는 啓字印이다. ㉤은 判부 시기를 적은 것이다. ㉥은 좁은 의미의 判부로, ‘落點’ 2자를 적었다. 이 낙점판부에 따라 인경왕후의 시호는 仁敬, 陵의 이름은 翼陵, 인경왕후의 殯殿 이름은 永昭殿으로 정해졌다.⁹⁶⁾

望單子라고 해서 모두 落點判付를 한 것은 아니었다. 후보자를 여럿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올릴 경

95) 『銀臺便攷』 「吏房攷」 〈文衡會圖〉, “落點, 以承傳色還下, 則書大年號、落點判付, 招吏郎出給。【薦望入啓後, 大田若已出, 則承傳色直傳于本院。】”

96)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1월 2일, “大行王妃諡號, 仁敬、孝仁、章獻, 仁敬落點, 陵號, 慎陵、翼陵、莊陵, 翼陵落點, 殿號, 永昭、永釐、敬寧, 永昭落點。”

우에는 낙점할 필요가 없었고 그럴 경우에는 ‘啓’ 1자만 적는 啓判付를 하였다.⁹⁷⁾ 앞의 [사진-9]가 그러한 사례이다. 망단자에 낙점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奉敎判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의 [사진-2]와 [사진-3]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승정원의 承旨房 望單子の 경우에도 落點判付를 하지 않았다. 承旨房 望單子란 여섯 명의 承旨가 담당할 승지방인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 工房을 각각 배정하기 위해 올리는 망단자이다. 승지방 망단자는 여섯 승지의 직명을 벌여 적고 각 승지의 직명 아래에 빈칸을 만들어서 들이면 국왕이 빈칸에 승지가 맡을 방을 써서 내려주었다.⁹⁸⁾ 그리고 國喪 기간에는 망단자에 낙점을 하지 않고 국왕이 口傳下敎로 ‘몇 번째 후보로 정하라.’라고 명하거나 망단자에 찌지를 붙이고 小啓字印을 찍어 주었다.⁹⁹⁾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시신을 안치할 관인 梓宮도 망단자를 올려 낙점을 받았다. 梓宮은 長生殿에서 관리하였으므로 長生殿이 梓宮 望單子를 작성해서 올렸으며, 아직 왕으로 즉위하기 전인 世子 또는 世孫의 낙점을 받아 재궁을 대령하였다.¹⁰⁰⁾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의 체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梓宮의 망단자에 열거한 梓宮의 치수도 각각 달랐다. 정조가 승하하였을 때에는 雨字, 露字, 騰字로 三望을 올려 首望인 雨字로 낙점을 받았다.¹⁰¹⁾

科試를 시행할 때 병조가 올리는 規矩單子에도 落點判付를 하였다.¹⁰²⁾ 規矩單子는 병조가 武士와 武官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科試의 시험과목과 선발기준 등을 적어서 국왕에게 올리던 단자이다. 武科는 11가지 과목 중 九구단자에 낙점을 받아 한 가지나 두 가지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렀고, 활 등을 쏘아서 맞힌 숫자로 선발할지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할지의 기준도 九구단자에 낙점을 받아 정하였다.¹⁰³⁾

이상에서 살펴본 落點判付를 정리하면 이렇다. 落點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落點’ 2자를 적는 관부로, 주로 單子에 활용되었다. 單子 중에서도 특히 望單子를 관부할 때 落點判付를 하였다. 그러나 承旨房 望單子는 낙점을 하지 않았고 承旨가 담당할 承旨房을 써서 내려주었으며, 梓宮 望單子도 낙점을 하지 않고 구두로 몇 번째 후보를 지정하였다. 망단자 이외에 規矩單子에도 낙점을 하였다.

97) 『銀臺便攷』 「禮房攷」 〈冊禮〉, “定名單子啓下時, 禮房承旨仍於賓廳, 書判付、大年號, 只書啓字。【備三望時, 則落點判付。】”

98) 『大典通編』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承政院, “六承旨房單子, 空間列書以入, 吏、戶、禮、兵、刑、工, 待填下分房。或與六曹堂上相避, 則啓稟換房, 有特旨, 則換房。”

99) 『銀臺便攷』 「吏房攷」 〈政事〉, “口傳政事備三望入啓, 則不爲落點, 以 ‘三望中某望爲之。’ 事, 書出傳敎之意, 因下詢承旨陳達。【丙申三月初十日。】 ○ 大喪時國恤公除前, 政事望, 不爲落點, 以付籤踏小啓字施行。”; 『銀臺便攷』 「禮房攷」 〈國恤〉, “凡望筒, 不爲落點, 以 ‘某望筒, 以承傳色口傳下敎曰 ‘以某望爲之。’, 書出傳敎頒布。”

100) 『銀臺便攷』 「禮房攷」 〈國恤〉, “梓宮, 以長生殿望單子入達, 依下令奉來。”; 『銀臺條例』 「禮攷」 〈國恤〉, “梓宮望單入啓, 以 ‘某望奉來。’ 下敎, 則書頒。”

101)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6월 29일, “長生殿梓宮望: ‘雨字【外長, 六尺九寸八分; 外廣, 二尺四寸三分; 外高, 二尺四寸五分; 內長, 六尺三寸八分; 內廣, 一尺八寸二分; 內高, 一尺八寸一分。】’, 露字【外長, 六尺九寸三分; 內長, 六尺三寸三分; 外廣, 二尺三寸一分; 外高, 二尺三寸; 內廣, 一尺六寸九分; 內高, 一尺六寸七分。】’, 騰字【外長, 七尺二分; 外廣, 二尺二寸五分; 外高, 二尺二寸七分; 內長, 六尺四寸二分; 內廣, 一尺六寸; 內高, 一尺六寸二分。】。’ 以承言色口傳下令曰: ‘以首望奉來。’”

102) 『銀臺便攷』 「兵房攷」 〈式年武科初試〉, “規矩單子, 該曹前期來呈, 則入啓, 落點判下後, 書付頒布, 招兵曹郎廳出給。【規矩單子, 受點後, 招致兵曹郎廳齎傳事, 戊午三月初八日定式。】”

103) 『經國大典』 「兵典」 〈試取〉 武科式年, “以十一技列書受點, 或出一技, 或出二技。”; 『受教輯錄』 「兵典」 〈諸科〉, “式年、增廣, 則用分數。別科, 則一依規矩落點, 以分數落點, 則用分數, 以中數落點, 則用中數。”

Ⅲ. 批答判付의 유형과 방식

批答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啓字印을 찍지 않고 국왕의 답변인 批答을 내려주는 관부를 가리킨다. 批答은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변하는 글 또는 문서를 가리킨다. 批答은 唐나라 때 황제가 신하의 상소에 대해 답변하던 글을 批 또는 批答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하였다.¹⁰⁴⁾ 批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說文解字』에서 批를 ‘손바닥을 뒤집어서 치다.[反手擊之也]’라고 해석한 것을 따라 ‘답변하여 돌려준다.’의 의미로 본 것이다.¹⁰⁵⁾ 원래의 문서 뒷부분에 답변을 적어서 문서를 올린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문서가 批 또는 批答이라고 본 견해이다. 또 하나는 批의 의미를 ‘보여준다.[示]’라고 보는 것이다. 신하가 올린 문서의 내용에 대해 국왕이 시비나 가부를 보여주는 문서가 批 또는 批答이라고 본 견해이다.¹⁰⁶⁾ 당나라 황제가 비답을 내려주던 제도는 宋나라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상소가 사용되기 시작한 삼국시대의 자료에는 ‘批答’이라는 어휘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사』에서 ‘批答’이라는 어휘가 처음 보이는 시기는 고려 말기인 공양왕 2년(1391)으로, 공양왕이 李成桂에게 내린 不允批答이 최초이다.¹⁰⁷⁾ ‘批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답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공양왕보다 앞선 충렬왕 때에도 보인다. 正言에 임명된 李仁挺이 郎舍들과 함께 상소하여, 왕을 수행한 하찮은 공로로 환관들을 관직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고 왕명을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자, 충렬왕이 그에 대해 ‘비답하기를, 「명령을 고치지 말라.」’라고 하였다.[批曰勿改成命]라고 비답을 내렸다.¹⁰⁸⁾ 이 기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거의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고, 충렬왕의 답변도 모두 ‘批曰’로 표현하였다. 이때의 ‘批’를 비답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批答’ 또는 비답의 의미하는 ‘批’라는 어휘가 고려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 중기에 활약한 李奎報의 文集인 『東國李相國集』에는 비답이 敎書·詔書와 함께 실려 있는데, 不允批答, 不允敎書, 依允敎書 등으로 구분되어 실려 있다.¹⁰⁹⁾ 조선 성종 때 徐居正 등이 편찬한 『東文選』에도 고려시대에 지어진 不允批答과 不允敎書가 실려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고려 선종(1083~1094)~숙종(1095~1105) 때 보인다.¹¹⁰⁾ 이들 비답과 교서만 보아서는 신하가 어떠한 문서를 올렸는지 알 수 없는

104)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1988), 20~21쪽. 『殿閣詞林記』 권9 「擬旨」, “唐宋以來, 臣僚章奏, 凡有所批答, 皆臣下代言中書省及集賢院, 翰林學士專之。”

105) 許同莘, 『公牘學史』, 中國人民大學印刷廳(1958), 102쪽.

106) 徐望之, 앞의 책, 52쪽.

107) 『高麗史』 「世家」 공양왕 2년 12월 5일(계해), “王不允批答曰: ‘撥亂反正, 實爲命世之材, 論道經邦, 必待天之相, 故其身之去就, 係於國之安危. ……毋煩固辭, 速踐乃職. 所請, 宜不允.’ 又遣中官賜衣酒教諭, 我太祖詣闕謝恩, 遂就職.”

108) 『高麗史』 「列傳」 〈諸臣〉, “仁挺爲正言, 與諸郎舍言: ‘近內豎微賤者, 皆以隨從之勞, 許通仕途, 雜廁朝班, 有乖朝宗之制. 請收成命.’ 王怒, 欲觀所爲, 陽許之, 既而復收其狀. 郎舍不卽從, 王囚詔文主事柳興, 命仁挺勿視事. 竟取其狀, 批曰: ‘勿改成命.’”; 『高麗史節要』 권19 충렬왕 2년 윤3월, “僉議府上言: ‘近者, 內豎微賤者, 皆以隨從之勞, 許通仕途, 混雜朝班, 有乖朝宗之制. 請收成命.’ 王怒, 欲觀其所爲, 陽許之, 既而復取其狀. 僉議府不卽從, 王囚詔文主事, 命右正言李仁挺勿視事. 竟取其狀, 批曰: ‘勿改成命.’”

109) 『東國李相國全集』 권33 「敎書·批答·詔書」, “柳光植讓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尙書右僕射判三司事不允敎書: ‘云云. ……所讓宜不允云云.’ ……李得紹讓中大夫國子祭酒知制誥不允批答: ‘云云. ……故除師氏之官, 以徇書生之望, 何未體於眷意而遽抗於讓章! 云云.’ ……司空左僕射文孝弼三度乞致仕依允敎書: ‘云云. ……勉從乃請, 非出于懷. 云云.’”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는 ‘표문을 보고 잘 알았다.[省表具悉/省表具之]’라고 하거나 ‘전문을 올려 사직한 내용을 보고 잘 알았다.[省所上箋辭職事具悉]’라고 하여 신하가 올린 表文이나 箋文에 대해 국왕이 내린 비답과 교서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태조실록』에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렸던 3통의 비답이 실려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비답은 조선전기보다 조선후기가 훨씬 많다. 조선왕조실록에서 ‘批答’으로 검색한 결과 총 1060건이 추출되었는데, 그중 선조 99건을 비롯하여 태조~선조까지가 286건이고, 나머지가 광해군 290건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의 실록에서 추출된 사례이다.

사료에서 批答判付라는 어휘는 한 차례만 보인다. 영조 9년(1733)에 徐宗玉의 上疏에 대한 批答을 다시 내려주면서 영조가 批答判付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다.¹¹¹⁾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를 ‘疏批判付’나 ‘聖批判付’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생략하여 批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¹¹²⁾ 따라서 批答判付는 批答을 判付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넓은 의미의 판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判付를 좁은 의미나 중간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判付와 批答은 각각의 왕명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啓字 印을 찍느냐 찍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批答判付는 어디에 작성하느냐에 따라 신민의 상달문서가 아닌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는 경우와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¹¹³⁾ 이를 편의상 각각 別紙批答과 餘紙批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別紙批答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에 대한 批答判付로 別紙에 批答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上疏·筭子·呈辭에 대한 批答이다. 우선 上疏에 대한 비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10) 『東文選』 권29 「批答」, “邵台輔讓兵部尙書知三司事不允批答【朴浩】: ‘省表具之。……所讓宜不允, 兼斷來章。’ ……宰臣任元厚再乞辭免不允: ‘教任元厚。省再上表陳乞辭免某職并舉某自代事具悉。……毋固謙沖之守, 以符眷注之懷。’; ……賜平章事响二度請老不允教書: ‘省表具悉。……所請宜不允。’”; 『東文選』 권30 「批答」, “李稷辭判議政府事箋不允批答【無名氏】: ‘省所上箋辭職事具悉。……所辭宜不允。故茲教示, 想宜知悉。’”

111) 『승정원일기』 영조 9년 7월 23일, “傳曰: ‘朝者處分, 慨世道之不公, 鑿末世之扶抑, 而所陳誠是。既示其意, 原望單非爰周者, 仍爲留中, 批答判付, 更下焉。’” 『영조실록』 같은 날 기사에서는 ‘批答判付’를 ‘疏批’로 표현하고 있다. 『영조실록』 9년 7월 23일(임인), “答曰: ‘朝者處分, 慨世道之不公, 鑿末世之扶抑, 而所陳誠是。既示其意, 原望單留中, 疏批改下焉。’”

112) 『승정원일기』 영조 3년 5월 17일, “以兼說書尹汲牌不進罷職傳旨, 傳于李瑜曰: ‘疏批判付, 俱以開釋, 則其在事體, 不當若是, 且雖復科之類, 既承開釋, 則不敢一向擱推。’”;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3월 25일, “傳于鄭必寧曰: ‘贊善疏批判付, 中官不傳, 當該中官, 從重推考, 遣史官與之偕入。’”;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0월 11일, “又達曰: ‘……頻接群臣, 講詢事務, 批判裁決, 無或淹滯而後, 方謂勤政, 而有疾患則不得爲也。’”;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9월 3일, “濟恭曰: ‘……均屬豫買之限以三十朔, 筵奏定式, 聖批判付, 亦不過三四朔, 而買賣之際, 奸弊層生, 每石一錢, 雖曰流來情條, 近來則或有三四錢除給之弊, 貢人輩。’”

113) 노인환은 비답을 신하가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비답과 중앙아문에서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비답으로 나누었으며, 전자는 다시 不允批答, 批答有旨, 批答諭書, 疏筭批答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草記批答, 啓辭批答, 問安批答으로 나누었다. 노인환,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28~29쪽.

- ①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2품 이상의 상소이면 ‘答曰’ 2자를 적지만 3품 이하의 상소이면 ‘答曰’ 2자를 적지 않는다. ……○ 玉堂의 차자, 成均館·四學儒生의 상소, 山林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모두 ‘答曰’ 2자를 적는다. 【산림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大臣과 동일하게 또 ‘卿懇’이나 ‘爾懇’ 2자를 적는다. 都尉와 宗班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도 ‘卿懇’ 2자를 적으며, 또 ‘史官을 보내 傳論하라.’라는 하교를 내린다.】¹¹⁴⁾
- ② 玉堂의 차자, 成均館·四學儒生의 상소, 山林의 상소, 2품 이상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答曰’ 2자를 적고, 大臣, 上輔國崇祿大夫, 山林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또 ‘卿懇’ 2자를 적는다. 【3품 이하 산림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爾懇’ 2자를 적는다. ○ 大君, 王子, 嫡王孫, 王孫, 資窮이 된 宗親과 儀賓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國왕과의 行렬을 따져서 ‘卿懇’ 2자를 적기도 하고 ‘爾懇’ 2자를 적기도 한다.】¹¹⁵⁾

①은 현종 때 편찬된 『銀臺便攷』에 수록된 조항이고 ②는 고종 때 편찬된 『銀臺條例』에 수록된 조항으로, 모두 상소와 차자에 대한 비답을 작성할 때의 방식과 관련된 조항이다. 우선 비답의 서두에는 ‘答曰’ 2자를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로 나뉘었다. 2품 이상 관원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答曰’ 2자를 적었고, 3품 이하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答曰’ 2자를 적지 않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成均館·四學儒生의 상소, 山林의 상소, 玉堂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는 품계와 관계없이 모두 ‘答曰’ 2자를 적었다. 『銀臺條例』에서는 王世孫과 王世孫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도 ‘答曰’ 2자를 적는다고 하였다.¹¹⁶⁾

일반적으로 상소에 대한 비답의 본론은 ‘省疏具悉’로 시작하였고, 차자에 대한 비답의 본론은 ‘省筭具悉’로 시작하였다. ‘省疏具悉’과 ‘省筭具悉’ 뒤에는 ‘卿懇’이나 ‘爾懇’ 2자를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로 나뉘었다. 大臣의 상소, 2품 이상 山林의 상소, 國왕보다 行렬이 높은 宗親과 儀賓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卿懇’ 2자를 적고, 3품 이하 산림의 상소와 國왕보다 行렬이 낮은 宗親과 儀賓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爾懇’ 2자를 적었다. 『銀臺條例』에서는 上輔國崇祿大夫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卿懇’ 2자를 적고, 大君·王子·嫡王孫·王孫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國왕과의 行렬을 따져 ‘卿懇’이나 ‘爾懇’ 2자를 적는다고 하였다. 비답에 ‘卿懇’이나 ‘爾懇’을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國왕에게 보고하여 추가하도록 하였다.¹¹⁷⁾

상소에 대한 비답의 본론 結辭에는 특별한 투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辭職上疏의 경우에는 상소한 관원의 직명과 품계에 따라 사직을 만류하는 글을 각각 다르게 기록하였다. 즉 2품 이상의 사직상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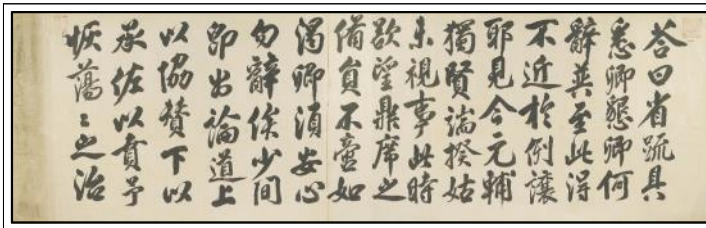
114) 『銀臺便攷』「吏房攷」〈疏批〉, “凡疏批, 二品以上, 有 ‘答曰.’, 三品以下, 無 ‘答曰.’ ……○ 堂筭、館學疏、山林疏, 並有 ‘答曰.’ 二字. 【山林, 又有 ‘卿懇、爾懇.’ 與大臣同, 都尉、宗班, 亦有 ‘卿懇.’ 又有 ‘遣史官傳論.’ 之教.】”

115) 『銀臺條例』「吏攷」〈疏批〉, “堂筭、館學、山林、二品以上, 有答曰二字; 大臣、上輔國及山林, 又有卿懇二字. 【三品以下山林, 爾懇. ○ 大君、王子、嫡王孫、王孫、資窮宗親·儀賓, 卿懇、爾懇隨行尊卑.】”

116) 『銀臺條例』「吏攷」〈王世孫上疏〉, “春坊陪進閣門, 傳于都承旨, 以承傳色入啓. 批旨, 都承旨詣閣承書, 奉詣東宮宣讀. 【疏批有答曰、爾懇. ○ 王世孫上疏與批答同.】”

117) 『銀臺條例』「附錄」〈提稟〉, “大君、王子、嫡王孫、王孫、大臣、上輔國及山林疏筭批答, 無‘卿懇’【行卑之大君、王子、嫡王孫、王孫、宗親、儀賓及三品以下山林, 爾懇.】二字, 則稟.”; 『六典條例』「吏典」〈承政院〉啓稟, “宗親·儀賓疏批無卿懇二字及遣史官傳論、山林疏批無卿懇·爾懇遣地方官傳論之教, 亦稟.”

대한 비답에는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卿其勿辭行公]’라고 기록하고, 3품 이하의 사직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爾其勿辭察職]’라고 기록하며, 監司와 留守를 비롯한 外任의 사직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卿其勿辭察任]’라고 기록한 것이다.¹¹⁸⁾ 그러나 사직상소에 대한 비답을 해당 관원을 遞差한 뒤에 내릴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구절을 비답 안에 기록하지 않았다.¹¹⁹⁾



[사진 1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고문서-
국왕문서-비답-未詳(1책-38294)

[사진-13]은 정조 12년(1788) 2월 16일에 行副司直 李性源의 상소에 대해 정조가 내린 비답으로,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에도 이성원의 상소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비답이 실려 있다. [사진-13] 비답의 서두에는 ‘答曰’ 2자가 기록되어 있다. 위의 비답을 받은 이성원이 당시 左議政에 제수된 상태에서 올린 상소이므로 비답에 ‘答曰’ 2자를 기록한 것이다. 비답의 본문은 앞에 ‘상소를 살펴보고서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省疏具悉卿懇]’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정조가 이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서술하고 있다. 이성원이 大臣에 제수되어 2품 이상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卿懇’ 2자를 적은 것이다. 비답의 말미에는 年號 및 연월일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위의 비답 앞부분의 여백에는 비답 내용과는 별도로 작은 글씨로 ‘무신년 2월 16일에 겸춘추 김봉현이 와서 전하였다.[戊甲二月十六日兼春秋金鳳顯來宣]’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정조가 내린 비답을 받은 이성원이 기록해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이 비답을 兼春秋 金鳳顯이 이성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신과 산림 등에게 내린 비답은 史官을 보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국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보고하였다.¹²⁰⁾ 『은대조례』에 의하면, 大君에게는 左承旨를, 王子君에게는 右承旨를, 嫡王孫·王孫·大臣·上輔國崇祿大夫·山林에게는 史官을 보내 비답을 전달하되, 지방에 있는 山林에게는 地方官을 보내 비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¹²¹⁾ 산림 이외에도 監司와 留守가 狀啓와 함께 자신의 상소를 올려 보내면 비답을 有旨로 작성해서 보냈고, 지방에 있는 관원이 縣과 道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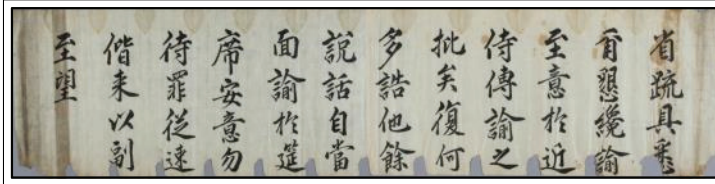
118)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辭職疏批, 二品以上, ‘卿其勿辭行公.’ 三品以下, ‘爾其勿辭察職.’ 外任, 則雖道伯、留守、竝‘卿其勿辭察任.’” 【新除道臣疏批, ‘卿其勿辭, 往欽哉.’ 掃墳, ‘卿其依所請往省焉.’ 或‘歷省焉.’】”

119)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凡辭職上疏承批, 在於已遞之後, 則批答, 無‘卿其、爾其勿辭察任.’等句語。”

120)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大臣疏筭批答及勿待命傳諭, 若無遣史官之命, 則微稟.”;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宗親·儀賓疏批無卿懇二字及遣史官傳諭、山林疏批無卿懇爾懇·遣地方官傳諭之教, 亦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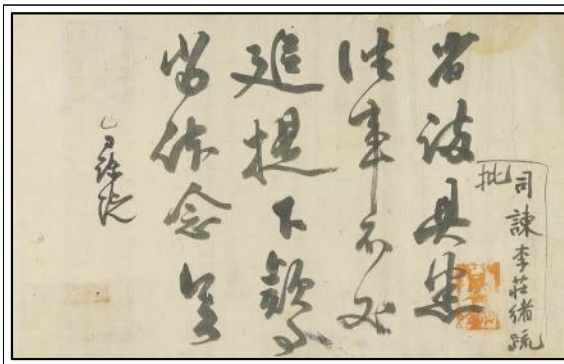
121) 『銀臺條例』 「吏攷」 〈疏批〉, “大君, 遣左承旨傳諭; 王子君, 遣右承旨; 嫡王孫、王孫、大臣、上輔國及山林, 遣史官。【在外山林, 則或遣地方官。】”

상소하면 批答을 有旨로 작성해서 監사에게 보내 傳諭하게 하였다.¹²²⁾



[사진 14]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교령류-비답-비답(批答)

[사진-14]는 숙종 9년(1683) 5월 5일에 前參議 尹拯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으로, 『승정원일기』에도 동일한 내용의 비답이 실려 있다. 이 비답이 [사진-13]과 문서 형식에 있어서 다른 점은 비답의 서두에 ‘答曰’ 2자가 없다는 점과 본문에 ‘卿懇’ 대신 ‘爾懇’ 2자를 적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參議가 정3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尹拯이 山林이라는 점에서 보면 ‘答曰’ 2자를 적지 않은 것은 본래 규정과는 맞지 않는다.



[사진 1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고문서-국왕문서-비답-未詳(1책-69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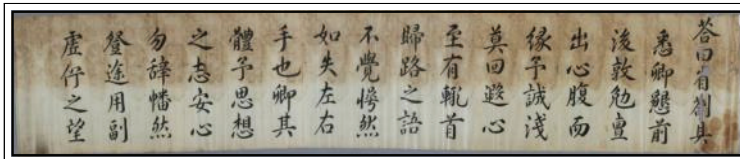
[사진-15]는 현종 7년(1841) 7월 28일에 司諫 李莊緒의 상소에 대해 현종이 내린 비답으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도 이장서의 상소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비답이 실려 있다. 이 비답이 [사진-13]과 문서 형식에 있어서 다른 점은 비답의 서두에 ‘答曰’ 2자가 없고 본문에 ‘卿懇’이나 ‘爾懇’ 2자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司諫의 품계가 종3품이어서 비답에 그런 어휘를 적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림이 아닌 정3품 이하 관원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는 서두에 ‘答曰’을 적지 않고 본문에 ‘卿懇’이나 ‘爾懇’을 적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사진-15] 비답의 앞부분에는 ‘日省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고 ‘사간 이장서의 상소에 대한 비답(司諫李莊緒疏批)’이라고 적혀 있으며, 뒷부분에는 ‘司諫院’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 비답이 사간 이장서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비답이 아니라 『승정원일기』를 작성하기 위해 매일 그날 승정원을 통해 출납한

122)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縣道上疏批下, 則成送有旨于該道臣處, 使之傳諭。……○ 畿伯及留守, 雖在京第上疏, 具書目狀啓上送, 則批答成送有旨。”

문서를 모아 엮는 傳教軸을 만들기 위해 작성된 비답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¹²³⁾ 상소와 차자는 전교축에 함께 묶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승정원일기』에 기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답만 [사진-15]처럼 따로 기록 하되, 이 비답이 이장서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비답의 앞부분에 ‘사간 이장서의 상소에 대한 비답[司諫李莊緒疏批]’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그에 따라 『승정원일기』에는 이장서의 상소를 기록한 뒤 이어서 이 비답을 기록해놓았다. [사진-15]의 비답에 ‘日省錄’이라는 인장을 찍은 것은 이 비답을 『승정원일기』뿐만 아니라 『일성록』에도 수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답의 뒷부분 여백에 기록된 ‘司諫院’은 이 비답을 전달할 곳을 명시한 것이다. 이장서의 소속이 사간원이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이 비답을 사간원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장서에게 전달하는 정본 비답은 [사진-15]의 비답 외에 1건을 별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차자에 대한 비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 후기에는 차자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이 大臣과 國舅, 玉堂과 臺諫 등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차자에 대한 비답도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¹²⁴⁾ 차자에 대한 비답을 작성하는 방식은 상소에 대한 비답을 작성하는 방식이 준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大臣과 國舅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는 答曰과 卿懇을 적었다. 그 외에 ①에서 살펴본 것처럼 玉堂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도 예외적으로 품계와 관계없이 ‘答曰’ 2자를 적었으나, ‘卿懇’이나 ‘爾懇’을 적지는 않았다.¹²⁵⁾ 옥당의 차자에 대해 국왕이 비답을 내려주면 승정원에서 옥당을 불러 비답 내용을 듣게 하였다.¹²⁶⁾



[사진 16] 한국고문서자료관
고문서-교령류-비답-비답(批答)

[사진-16]은 숙종 26년(1700) 8월 19일에 左參贊 尹拯의 차자에 대해 숙종이 내린 비답으로, 『승정원일기』에도 동일한 내용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¹²⁷⁾ 尹拯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는 ‘答曰’과 ‘卿懇’이 모두 적혀 있다. 左參贊의 資級이 정2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었던 것이다.

이제 別紙批答 중 呈辭에 대한 批答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呈辭는 앞서 啓字判付의 啓判付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원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 올리던 문서였으므로, 啓判付를 통해 허락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되었다. 다

123) 서울대 규장각에 [사진-15] 비답의 앞뒤로 함께 묶여있는 문서들은 모두 『승정원일기』 현종 7년 7월 28일에 수록되어 있어 이 문서 묶음이 그날치의 傳教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傳教軸에 대해서는 명경일, 「정조대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曆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2014), 참조.

124) 이강욱, 「上疏와 劄子の 형식 및 분류」, 169~177쪽.

125)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堂筭、館學疏、山林疏, 並有 ‘答曰.’ 二字. ……○ 堂筭處置, 依例批答事, 下教, 則以 ‘答曰’ ‘省筭具悉. 處置事, 依施.’ ” 書出. ”

126) 『銀臺便攷』 「禮房攷」 〈劄子〉, “玉堂劄子到院, 則以司諫入啓, 批下後, 聽批. ”

127)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8월 19일에는 京畿監司가 尹拯의 上疏를 올려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숙종의 비답도 ‘省疏具悉卿懇’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尹拯의 문집인 『明齋遺稿』 「疏狀書啓」에는 비답이 ‘省筭具悉卿懇’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 呈辭 중 身病呈辭만은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렸기 때문에 啓字印을 찍게 되면 체차해 주겠다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므로 身病呈辭에 대해서는 체차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심하고 조리하라.’라는 등의 批答을 내려주었다. 身病呈辭 이외에 鍼灸呈辭와 沐浴呈辭도 자신의 신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하던 呈辭였으므로 계자인을 찍어서 내려주기도 하고 ‘안심하고 조리하라.’라는 批答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掃墳呈辭에 대해서도 ‘경은 청한 대로 가서 성묘하라.’라거나 ‘경은 청한 대로 두루 성묘하라.’라고 批答을 내리기도 하였다.¹²⁸⁾ 특히 大臣 등 고위 관원의 身病呈辭에 대해서는 不允批答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 ③ 大臣의 呈辭 중 첫 번째 정사에서 세 번째 정사까지에 대해서는 不允批答을 내리고, 네 번째 이하의 정사에 대해서는 敦諭 또는 別諭를 내리거나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는 批答을 내린다. 【……】 ○ 대신의 정사는 司謁을 통해 入啓하고,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는 批答을 내리면 傳敎를 써서 내준 뒤에 批答을 正書해서 議政府의 司錄을 불러서 전해주게 한다. 【……】 ○ 대신의 정사에 대해 不允批答을 내려주라고 批答을 내리면 전교를 써서 내주고, 예문관의 知製敎에게 분부하여 批答을 지어 올리게 해서 入啓하여 啓下를 받은 뒤에 注書가 正書한다. 【불운批答은 敎書 형식으로 짓는다.】 불운批答을 지어 입계할 때에는 불운批答에 御寶를 내어달라고 청하고, 불운批答에 어보를 찍고 난 뒤에 史官이 불운批答을 가지고 가서 전한다. ○ 대신의 針灸呈辭・加土呈辭・掃墳呈辭에 대해 啓字印을 찍어 내려주거나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라고 批答을 내려주면, 의정부의 郎廳을 시켜 傳諭하게 하지 않고 승정원에서 곧바로 분부한다.¹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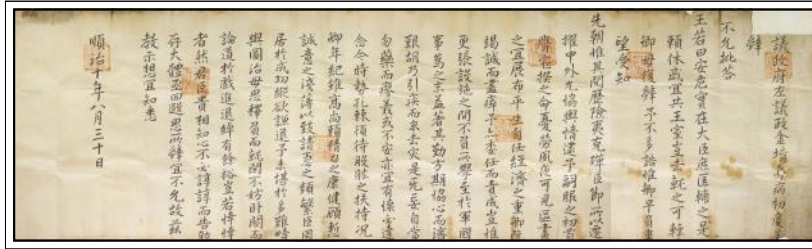
위에서 말한 ‘大臣의 呈辭’란 大臣의 身病呈辭를 가리킨다. 대신이 여러 차례 신병정사를 올릴 경우에 그 중 첫 번째 정사부터 세 번째 정사까지에 대해서는 불운批答을 내려주되, 불운批答은 知製敎를 시켜 짓게 하고 注書가 정서하여 御寶를 찍은 뒤에 史官을 시켜 대신에게 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때의 불운批答은 대신의 사직에 대해 단순히 ‘윤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내리는 批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批答을 知製敎가 國왕을 대신하여 敎書 형식으로 짓고 御寶를 찍어서 내리는 批答을 가리킨다. 지제교가 교서와 불운批答을 지을 때에는 차례대로 배정되어 서로 돌아가면서 지었다.¹³⁰⁾ 대신의 네 번째 신병정사 이하부터는 國왕 또는 승지 등이 敦諭나 別諭를 지어 내리기도 하고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라는 내용으로 批答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諭旨와 批答도 사관 등을 보내어 傳諭하게 하였다. 世子가 代理聽政할 때 대신의 신병정사에 대해 내리는 不允批答은 不許下答이라고 불렀다.¹³¹⁾

128)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新除道臣疏批, ‘卿其勿辭, 往欽哉.’ 掃墳, ‘卿其依所請往省焉.’ 或 ‘歷省焉.’”

129) 『銀臺便攷』 「吏房攷」 〈呈辭〉, “大臣呈辭, 初度至三度, 不允批答, 四度以下敦諭或別諭或安心調理. 【……】 ○ 大臣呈辭, 以司謁入啓, 安心調理批下, 則書出傳敎後正書, 招致司錄傳給. 【……】 ○ 大臣呈辭, 不允批答批下, 則書出傳敎, 分付藝文館知製敎撰進, 入啓啓下後, 堂后正書【如敎書.】, 入啓時, 寶啓請, 安寶後, 史官往傳. ○ 大臣針灸呈辭及加土、掃墳呈辭, 踏啓字或安心調理批下, 則不以郎廳傳諭, 直爲分付.”

130) 『銀臺便攷』 「禮房攷」 〈弘文館〉, “凡時急詞命, 行公玉堂代撰, 如各樣祭文、各樣敎書及大臣不允批答, 皆自藝文館排定製進.”

131) 『銀臺便攷』 「吏房攷」 〈代聽〉, “大臣呈辭, 三度以前, 不允批答稱不許下答; 三度以後, 或敦諭或別諭或安心調理.” 國왕의 批答과 세자의 下答에 대해서는 조미은, 앞의 논문, 281~283쪽 참조.



[사진 1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국왕문서-비답-
金堉(1책-190879)

[사진-17]은 金堉의 첫 번째 身病呈辭에 대해 효종이 내린 不允批答이다. 이 不允批答은 효종 4년(1653) 8월 30일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고, 규장각에는 이것 말고도 9월 3일에는 金堉의 2번째 身病呈辭에 대한 不允批答, 9월 5일에는 金堉의 세 번째 身病呈辭에 대한 不允批答이 남아 있으며, 『승정원일기』에는 각각 그보다 하루 전날 金堉가 身病呈辭를 올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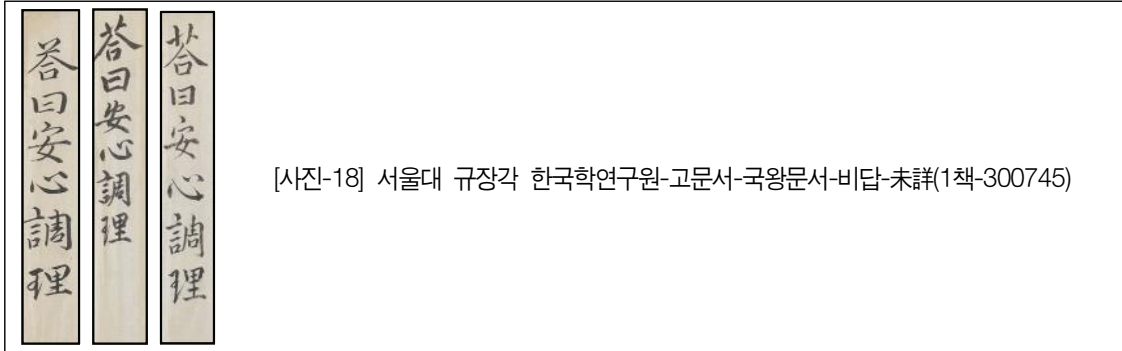
[사진-17]에서 보듯이 不允批答은 다른 批答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批答을 작성하는 절차부터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批答은 국왕이 직접 불러주면 입시한 승지가 받아 적었으나, 불운 批答은 知製敎가 짓고 주서가 정서하였다. 성종은 不允批答을 직접 지어서 내리기도 하였다.¹³²⁾ 批答의 형식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批答은 ‘答曰’과 ‘卿懇’·‘爾懇’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차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批答은 ‘省疏具悉’, 차자에 대한 批答은 ‘省筭具悉’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불운 批答은 서두, 본론, 말미를 모두 갖추어, 서두에는 ‘아무개의 몇 번째 呈辭에 대한 不允批答’이라고 적었고, 본론은 敎書 형식에 따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王若曰]’로 시작하여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밝히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故茲敎示想宜知悉]’라고 적었으며, 말미에는 연호와 연월일을 적었다.¹³³⁾ 그런 점에서 不允批答은 모든 批答判符 중에서도 가장 형식이 엄격하였고 내용이 정중하였다.

③의 사례에서 ‘大臣의 呈辭 중 첫 번째 정사에서 세 번째 정사까지에 대해서는 不允批答을 내리고, 네 번째 이하의 정사에 대해서는 敦諭 또는 別諭를 내리거나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는 批答을 내린다.’라고 하였고, ‘대신의 針灸呈辭·加土呈辭·掃墳呈辭에 대해 啓字印을 찍어 내려주거나 「안심하고 조리하라.[安心調理]」라고 批答을 내려주면’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진-18]은 大臣의 身病呈辭나 鍼灸呈辭 등에 대해 내린 批答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18]의 批答들은 총 27장의 別紙批答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중 위의 사진처럼 ‘答曰安心調理’라고 적힌 批答은 총 9건이 있다. 이러한 批答은 ③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정원의 注書가 별도의 종이에 정서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別紙批答을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대조하여 동일한 批答이 수록된 기사를 찾아 수급자와 발급 시기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승

132) 『성종실록』 21년 10월 4일(임자), “廣陵府院君李克培上狀辭職曰: ‘臣今年六十有九, 七旬纔隔數朔, 精神昏耗, 加以脚蹇, 艱於行步, 強隨隨他, 臣實內愧. 伏望命收臣職, 使得自適以延餘齡.’ 上親製不允批答賜之.”; 『성종실록』 23년 8월 19일(정사), “知中樞府事金宗直卒. ……己酉陞資憲刑曹判書, 患風痺, 賜告不愈, 遷知中樞府事, 乞浴東萊溫井, 因歸密陽舊第, 上章辭職. 上親製不允批答以賜之.”

133) 조선왕조실록에서는 ‘王若曰’로 시작하는 敎書 형식의 불운 批答이 중종10년(1515)에 처음 보인다. 『중종실록』 10년 5월 6일(임진), “賜宋軼不允批答: ‘王若曰, ……所辭宜不允, 故茲敎示.’”



정원일기』에 동일한 비답 내용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에게 내린 비답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을 모두 적었다. 총 27건의 別紙批答 중 上疏에 대한 비답이 2건, 劄子에 대한 비답이 15건, 呈辭에 대한 비답이 10건이다. 비답의 수급자로는 姜碩期가 가장 많고 이어서 沈悅과 尹昉이 많은 것으로 보아, ‘答曰安心調理’라고 적힌 비답도 이들에게 내린 비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비답들은 한 사람이 받아서 粘連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면, 모두 姜碩期에게 내린 비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표 2〉 [사진 18]이 포함된 규장각 소장 別紙批答의 분류

번호	수급자	발급 시기	비답 분류	비답 내용
1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2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3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4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5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6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7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8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9	姜碩期	인조 18-6-11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深嘉卿意筭陳之事無非至論敢不惕念且天之降災實由于否德卿宜安心勿爲控辭
10	尹昉	인조 9-9-19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卿意予意已諭須勿固辭
11	尹昉	인조 9-7-3	劄子批答	答曰省卿上劄予甚喜悅卿其調理行公勿以尠未出仕爲慮
12	趙翼 沈悅	인조 12-1-23 인조 16-9-27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筭陳之事當與諸大臣議處
13	申翊聖	인조 19-4-8	上疏批答	答曰省疏具悉卿其依願往來
14	沈悅	인조 21-11-1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至慨予意已諭卿其勿爲固辭以副上下之望
15	미상	미상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卿其安心調理勿爲待罪
16	姜碩期	인조 20-6-4	劄子批答	答曰省筭具悉卿意卿其勿爲控辭安心調理

번호	수급자	발급 시기	비답 분류	비답 내용
17	미상	미상	筭子批答	答曰省卿上筭子深缺然卿須體予至意從容調理勿復牢辭
18	姜碩期	인조 19-1-22	上疏批答	答曰省疏具悉卿懇日今艱處比前愈甚卿雖有病臥閣論道勿爲固辭以副予望
19	姜碩期	인조 19-2-5	筭子批答	答曰省筭具悉至懇卿以忠良輔弼身佩安危臥閣論道以濟時艱須勿固辭
20	姜碩期	인조 19-2-23	筭子批答	答曰省卿上筭子甚缺然卿雖有所患爲國論道勿爲固辭
21	姜碩期 沈悅	인조 20-2-18 인조 23-4-13	呈辭批答	答曰卿辭至此不獲已勉從之意遣史官諭之
22	미상	미상	呈辭批答	答曰安心調理
23	姜碩期 金自點	인조 20-3-8 인조 21-1-28	筭子批答	答曰省筭具悉至懇卿之固辭至此當勉副焉
24	姜碩期	인조 20-1-22	筭子批答	答曰省筭具悉至懇卿之病勢今雖如此日氣溫暖則自當差愈卿須念同休共戚之義毋忘扶顛持危之心
25	姜碩期	인조 19-8-20	筭子批答	答曰省筭具悉予甚缺然卿之所患似非朝夕危急之症須體至意臥閣論道勿爲固辭
26	姜碩期	인조 19-4-23	筭子批答	答曰省卿上筭子知所修而敬聞過矣比來災異無非否德所召卿宜安心勿爲控辭
27	姜碩期	인조 18-9-20	筭子批答	答曰省筭具悉卿意變異之作皆由寡味實非卿等未能變理也予當更加惕念卿宜安心勿〈缺落〉

이상에서 살펴본 別紙批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別紙批答은 신하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비답을 상달문서의 여백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적어서 내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 중 別紙批答을 활용한 상달문서로는 上疏, 筭子, 呈辭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소에 대한 비답의 본론은 ‘省疏具悉’로 시작하였고, 차자에 대한 비답의 본론은 ‘省筭具悉’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소와 차자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과 資級에 따라 ‘省疏具悉’과 ‘省筭具悉’ 앞에 ‘答曰’ 2자를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하였으며, ‘省疏具悉’과 ‘省筭具悉’ 뒤에 ‘卿懇’이나 ‘爾懇’ 2자를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하였다. 呈辭에 대한 비답은 일반적인 비답일 경우에는 서두에 ‘答曰’ 2자를 적고 본론을 간략하게 적었으나, 不允批答의 경우에는 知製敎가 敎書의 형식에 맞추어 지어 注書가 정서하였다.

呈辭의 경우에는 批答判付 뿐만 아니라 啓字判付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하였다. 신민이 올린 上疏와 筭子에 대해서는 국왕이 비답을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비답을 내려주지 않고 啓字判付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위 관원과 侍從이 올린 상소와 차자 및 身病呈辭에 대해 비답을 내려주지 않고 啓字印만 찍어서 내려주는 것은 상대를 예우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그런 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내려주었다는 것은 遞差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되었으므로 승정원에서 국왕의 의사를 다시 물어본 뒤에 처리하였다.¹³⁴⁾ 따라서 上疏, 筭子, 身病呈辭 등에 국왕이 啓字判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134) 『승정원일기』 인조 3년 5월 22일, “大司諫鄭蘊上疏: ‘……臣無任瞻天望聖, 戰慄懇迫之至, 謹昧死以聞.’ 踏啓字下該曹.”;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4월 25일, “兼史曹判書李貴筭曰: ‘……取進止.’ 踏啓字而下.”; 『인조실록』 22년 3월 13일(신축), “左議政沈悅呈辭五度, 上踏啓字而下. 都承旨李行遠啓曰: ‘伏見左議政沈悅呈辭單子, 只踏啓字而下, 非但事異常規, 其於待大臣之道, 有所欠缺. 臣等職忝出納, 惶恐敢稟.’ 答曰: ‘先朝亦有如此之規. 卿等勿以爲怪.’”; 『숙종실록』 45년 6월 14일(을묘), “副修撰南一明, 因上敎上疏辭職, 又曰: ‘……’ 疏入, 踏啓字. 【凡辭職之疏, 踏啓字, 則例遞差.】”;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卿宰辭職上疏, 無批答踏啓字以下, 則微稟【以‘宰臣上疏, 例無踏啓字.’之意, 入稟.】 ○ 臺臣上疏踏啓字,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다만 相避의 혐의가 있어 교체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 등으로 올린 경우에는 銓曹에 上疏나 筭子를 啓下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國왕의 재가를 거친 상소와 차지는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은 뒤 이면지 등으로 사용하였다.¹³⁵⁾ 대신의 身病呈辭도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승정원에 보관해 두었다.¹³⁶⁾

2. 餘紙批答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 중 말미의 여백에 啓字印이 찍혀 있지 않고 國왕의 批答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草記·啓辭·書啓이다. 이처럼 원래의 상달문서의 여백에 批答관부를 적는 것을 편의상 餘紙批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선 이들 세 가지 문서에 대한 國왕의 판부를 批答이라고 부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大臣이 올린 草記에 대한 批答은 史官을 보내 전해주시 말고 議政府司錄에게 분부하기만 한다.¹³⁷⁾

② 別歲抄는 吏曹와 兵曹가 올린 草記에 대해 批答을 내려준 뒤에 入啓한다.¹³⁸⁾

③ 吏曹判書와 吏曹參判을 재차 劄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청하는 승정원의 啓辭에 대한 批答에 ‘이 조참의는 推考만 하고 이조참관은 劄 안으로 불러들이라.’라는 명이 있었다. 그러자 吏曹參判 金道喜가 불러들이는 명을 받고 劄에 나아가서 상소하기를, ‘이조판서는 애당초 劄 안으로 불러들이지도 않았는데 이조참의가 대뜸 명을 받고 응하는 일은 銓曹의 전례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고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지레 劄문을 나갔다. 주상이 金道喜의 상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批答을 내렸다.

“경의 말은 괴이할 것이 없으니, 원래의 批答은 환수하겠다.”¹³⁹⁾

該房不即提稟事，當該承旨從重推考。【辛亥五月初四日下教。】”；『六典條例』「吏典」〈承政院〉傳旨，“辭職疏批，有許施、依施之命，則以遞差捧傳旨。【無批答踏啓字，則以踏啓字頒布，亦捧遞差傳旨。】”

135) 『승정원일기』 효종 1년 4월 14일, “政院啓曰：‘……其元疏，則非但此疏，凡疏筭，日記曆書之後，日月差久，則或例用於院中休紙，故未能搜得矣，敢啓。’”

136)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6월 10일, “興慶曰：‘臣聞左相辭單，賜批後，政院還給，故史官持去，傳于本家云。此是無前之事，敢達。’上曰：‘大臣辭單，例置政院乎?’聖輔曰：‘臣不知前例，而昨日史官受去批答時，元無辭單持去之事矣。’上曰：‘自內，則只呼望初度、再度而已，元無留置之事矣。’仍命彦國出問其曲折，彦國出閣門外，招政院書吏及議政府錄事，問其曲折，則昨日左相辭單，果下於政院，而院規，則大臣辭單，下政院後，仍爲留置本院房直處。而今番，則院吏誤爲出給政府奇別書吏，故政府書吏仍納於左相家云。彦國，以此意入傳，承旨仍爲轉白榻前。興慶曰：‘史官持去之說，臣是誤聞於錄事，而辭單之出給於政府吏，承旨亦難免不察之失，該房承旨，當爲推考矣。’上曰：‘依爲之。’聖輔曰：‘辭單之置於房直之房，例也，而院吏出給政府奇別書吏，致此誤傳云。當該書吏，囚禁科罪之意，敢達。’上曰：‘依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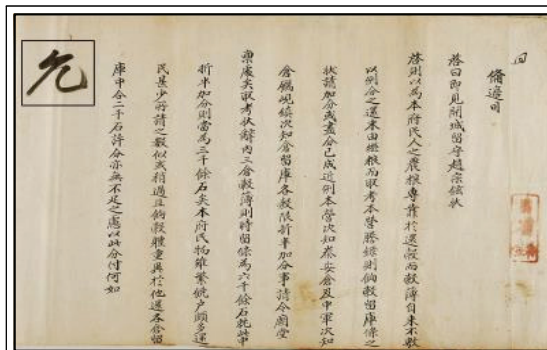
137) 『銀臺便攷』「吏房攷」〈大臣〉，“大臣草記批答，勿遣史官，只分付本府司錄。”

138) 『六典條例』「吏典」〈承政院〉出納，“別歲抄，該曹草記批下後，入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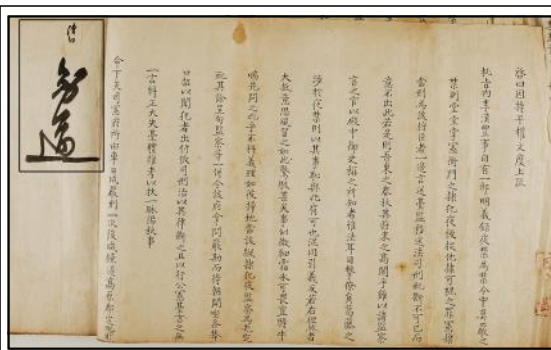
139) 『銀臺便攷』「吏房攷」〈政官〉，“吏曹判書、參判再牌啓辭批答，有‘參議只推，參判牌招。’之命。參判金道喜承牌詣闕疏陳‘長銓之初不出牌，次堂之遽然冒膺，銓家之所未有。’云云，徑出禁局。答曰‘卿言無恠，原批還收。’”

- ④ 臺諫의 啓辭를 2更에 入啓하였으나 3경까지도 批答을 내려주지 않으면 주상께 넌지시 여쭙는다.¹⁴⁰⁾
- ⑤ 주상이 崔宗周에게 전교하였다.
“右議政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에 대한 批答은 領議政에게 傳諭하러 나간 承旨가 가서 전하게 하라.”¹⁴¹⁾
- ⑥ 주상이 義禁府의 文書를 읽으라고 명하고, 이어서 判付를 쓰라고 명하였다. 또 右參贊 洪樂純의 상소에 대한 批答을 쓰라고 명하였다. 또 僭來承旨의 書啓에 대한 批答을 쓰라고 명하였다.¹⁴²⁾

①과 ②는 草記에 대해 批答을 내려주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고, ③과 ④는 啓辭에 대해 批答을 내려주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⑤와 ⑥은 書啓에 대해 批答을 내려주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승정원에서 承傳色이나 司謁을 통해 入啓한 상달문서는 批答을 작성하여 승정원에 내려주었고, 승지가 상달문서를 가지고 입시한 상황에서는 승지가 직접 批答을 받아 적었다.¹⁴³⁾ 臺諫이 입시하여 傳啓한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승지가 批答을 받아 적었다.¹⁴⁴⁾



[사진 19]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1799년 4월 2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초기(草記)5



[사진 20]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초기(草記)7

140)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臺啓, 二更入啓, 而批答至三更未下, 則微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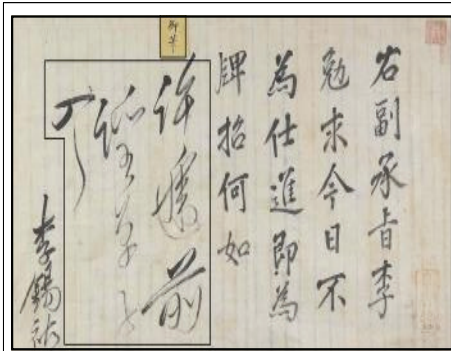
141)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2월 2일, “傳于崔宗周曰: ‘右議政書啓批答, 使領議政處傳諭承旨往傳。’”

142) 『승정원일기』 정조 3년 2월 24일, “上命讀禁府公事, 命書判付。又命書右參贊洪樂純疏批。又命書僭來承旨書啓批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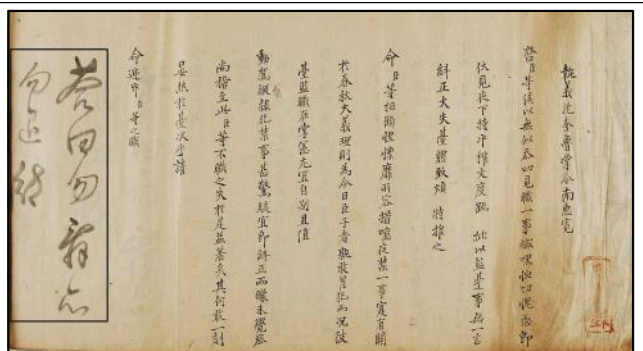
143) 『승정원일기』 영조 5년 8월 27일, “顯命進伏, 讀弘文館副提學李秉泰乘駟上來草記。上曰: ‘書「依啓。」’ 顯命讀吏曹、工曹正郎宋性源等埒埴給由草記, 踏啓字。……張泰紹進伏, 讀都摠府副摠管李眞淳書仕草記。上曰: ‘書「知道。」’ ……金始燮進伏, 讀修撰柳儼疏。上親呼批答, 使書之。……上曰: ‘縣道疏則入之, 踏啓字。’”;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6월 1일, “命書吏曹草記批答訖。又命書御史書啓判付。”

144)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3일, “正言柳儼入侍, 上曰: ‘正言進來。’ ……儼啓曰: ‘……請還收時龍刑推發配之命, 仍令王府依律處斷。’ 答曰: ‘勿煩。’ ……又啓曰: ‘……請李倚天極邊遠竄。’ 【新啓。】 答曰: ‘公議晦塞, 黨習日甚如此, 脅從之類, 皆爲竄逐, 則餘者, 幾何? 削奪官爵, 門外黜送。’”

[사진-19]는 備邊司의 草記 및 그에 대한 국왕의 批答判付이고, [사진-20]은 刑曹의 草記 및 그에 대한 국왕의 批答判付이다. 두 문서 모두 草記의 말미 여백에 批答을 적었다. 다만 [사진-19]는 批答의 서두가 적혀 있지 않고 ‘允’ 자만 적혀 있으나 [사진-20]은 批答 ‘知道’ 2자의 서두에 ‘傳曰’이라고 적힌 찌지를 붙여 놓았다. [사진-19]의 초기와 批答은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4월 27일에 수록되어 있고, [사진-20]의 초기와 批答은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4일에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批答의 서두에 ‘傳曰’ 2자를 기록하고 있다. 두 문서 모두 『日省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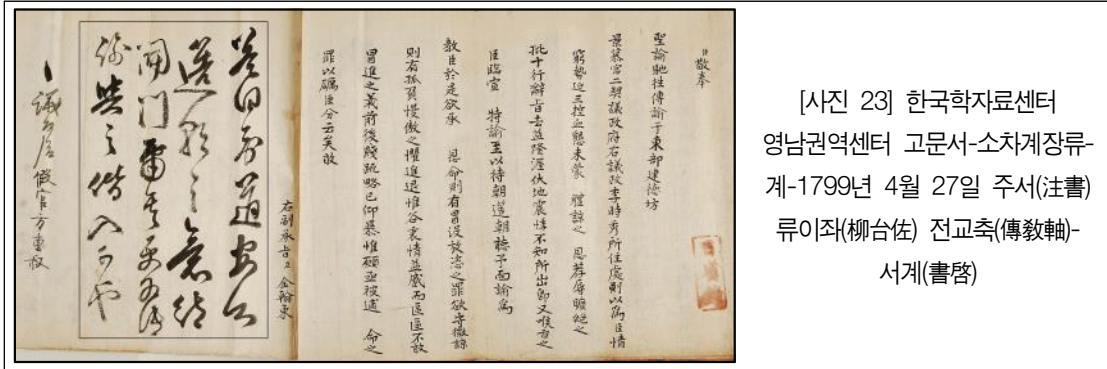
[사진 21]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관부문서-계문-啓文-(2책-522610)



[사진 22]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계사-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계사(啓辭)5

[사진-21]은 승정원의 啓辭와 그에 대한 批答이고, [사진-22]는 臺諫의 啓辭와 그에 대한 批答이다. 두 문서 모두 啓辭의 말미 여백에 批答을 적었다. 다만 [사진-21]은 批答의 서두가 없이 바로 ‘許遞前望單子入之’라는 批答이 적혀 있으나, [사진-22]는 批答의 서두에 ‘答曰’ 2자를 적고 ‘勿辭亦勿退待’라는 批答이 적혀 있다. 그리고 [사진-21]의 批答 위에는 ‘御筆’이라고 2자를 적은 황색 찌지가 붙어 있어 이 批答이 국왕인 순조가 직접 작성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批答 왼쪽의 ‘李錫祐’ 3자는 순조의 批答에 따라 承旨의 前望單子를 들여 李錫祐가 낙점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21]의 啓辭와 批答은 『승정원일기』 순조 18년 8월 16일에 수록되어 있는데, 批答의 서두에는 원래 문서의 批答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傳曰’ 2자가 추가되어 있다. [사진-22]의 啓辭와 批答은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4일에 수록되어 있다. 두 문서 모두 『日省錄』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진-22] 批答의 서두를 ‘批以’라고 기록하였다.

[사진-23]은 承旨의 書啓와 그에 대한 批答으로, 書啓의 말미 여백에 批答을 적은 餘紙批答이다. 이 批答의 서두에는 ‘答曰’ 2자가 적혀 있다. [사진-23]의 書啓와 批答은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4월 27일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도 같은 날짜의 『일성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批答의 서두를 ‘教以’라고 기록하였다. 餘紙批答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해당 상달문서와 批答의 처리이다.



[사진 23]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소차계장류-
계-1799년 4월 27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教軸)-
서계(書啓)

⑦ 〈都承旨 李一相이〉 또 아뢰었다.

“주상께서 備忘記를 내려 推考하라고 한 사안 및 臺諫이 啓辭를 올리거나 각 衙門이 草記를 올려 推考하기를 청하여 허락받은 사안은 승정원에서 推考傳旨를 작성하여 들여보내 재가를 받아 거행 하지만, 義禁府나 六曹가 원래의 문서를 첨부한 啓目 등의 문서를 올려 推考하기를 청하여 재가 받은 사안은 啓目を 올린 해당 관사에서 직접 刑曹로 공문을 보내거나 해당 道로 關文을 보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옛 규례입니다. 대체로 臺諫이 올린 啓辭와 각 曹가 올린 草記는 승정원에 남겨두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으레 傳旨를 작성하여 들여보내지만, 원래의 문서를 첨부한 啓目 등의 문서는 해당 承旨房의 承旨가 직접 判付를 적은 뒤 長銜을 적고 署名을 하여 각 해당 관사에 도로 내려주고 더 이상 傳旨를 작성하여 들여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각 해당 관사에서 직접 거행합니다.”¹⁴⁵⁾

⑦은 상달문서에 따라 각각 판부한 뒤의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달문서 중 草記와 啓辭는 판부한 뒤 해당 관사에 문서를 돌려주지 않고 승정원에 보관하고, 啓目 등은 승지가 판부를 적어 해당 관사에 돌려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傳教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餘紙批答이 적힌 草記, 啓辭, 書啓는 해당 문서를 올린 관사나 관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승정원의 傳教軸에 묶어놓았다.¹⁴⁶⁾ 그리고 판부 내용을 전달할 해당 관사 및 승정원에 찾아와서 판부 내용을 확인한 관원의 職名과 姓名이 비답과 별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草記의 경우에는 승정원에 대령하고 있던

145) 『승정원일기』 효종 3년 9월 29일, “又啓曰: ‘凡備忘推考及臺諫啓辭、各衙門草記推考、則自本院捧傳旨舉行、而至於義禁府、六曹啓目粘連等公事中推考、則自本司直爲移文于刑曹、或移關于該道、使之舉行、乃流來舊規也。大概臺諫啓辭、各曹草記、則留置本院、故本院例爲捧傳旨、而啓目粘連等公事、則該房承旨親出判付、具銜署署、還下各其司、更無捧傳旨之事、故各其司直爲行。’”

146) 傳教軸의 실물 사진은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원래의 草記는 승정원의 草記軸에 첨부해 놓는다.’라고 한 것 중의 草記軸은 傳教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현종 6년 2월 8일, “政院啓曰: ‘以禁府李慶綿等定配單子、傳曰「政院誤爲傳書分付之致耶? 何如是誤書而承旨捧入乎?」事、命下矣。今日榻前判下、元草、則粘付於本院草記軸、正書啓下文書、則出給本府、使之以此舉行矣。其中柳璣、當以不限年書之、而書以徒三年、此緣本府不能覺察、而單子日暮來呈、故相準之際、臣亦未及覺察、矇然捧入、不勝惶恐。此單子、還出給、使之改入之意、敢啓。’”

해당 관사의 待命書吏가 批答을 베껴 적어서 해당 관사로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⁷⁾ 臺諫의 啓辭에 대한 批答은 臺廳으로 가지고 가서 전해주었다.¹⁴⁸⁾

반면에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啓字判付를 한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呈辭, 上言, 擊錚原情 등의 상달문서들은 傳教軸에 묶여 있지 않다. 대신 이들 문서는 승지가 별도의 종이에 해당 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事’로 요약하고 이어서 좁은 의미의 관부만을 적어놓았을 뿐이다. 이들 啓字判付를 한 상달문서들은 관부한 뒤에 승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餘紙批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餘紙批答이란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國왕의 批答을 적어서 내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남아있는 상달문서 중 餘紙批答이 적용된 문서로는 草記, 啓辭, 書啓가 있다. 餘紙批答은 상달문서의 말미에 判付를 적는다는 점에서는 啓字判付와 동일하지만, 관부할 때 啓字印을 찍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IV. 맺음말

조선시대의 法典과 官撰史料에 수록된 臣民의 상달문서 중 國왕이 관부하는 문서로는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 呈辭, 上疏, 筭子, 草記, 啓辭, 書啓 등 총 13종이 있었다. 臣民의 상달문서에 대한 國왕의 관부는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관부와 啓字印을 찍지 않고 글로만 답변하는 관부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啓字判付로, 주로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에 활용되었고, 후자는 批答判付로, 주로 上疏, 筭子, 草記, 啓辭, 書啓에 활용되었으며, 呈辭의 경우에는 啓字判付와 批答判付가 둘 다 활용되었다.

啓字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 말미 여백에 啓字印을 찍는 관부로, 國왕의 처결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자를 적느냐에 따라 奉教判付, 啓判付, 落點判付로 나뉘었다. 奉教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奉教’ 2자를 적는 관부로, 單子와 照律啓目에 활용되었다. 啓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啓’ 자를 적는 관부로, 啓本, 啓目, 狀啓, 單子, 別單, 上言, 擊錚原情, 呈辭 등에 활용되었다. 落點判付는 좁은 의미의 관부 서두에 ‘落點’ 2자를 적는 관부로, 주로 單子에 활용되었다.

147)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0월 24일,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該曹舉行, 極爲駭然, 使之查實草記。』事, 命下矣。罪人安景濂移配草記, 前判書鄭好仁, 今九月二十八日入啓, 而及臣今十月初五日待罪本曹後, 本月十一日, 承政院待令本曹書吏書送允下傳教, 故卽爲行會。而今因傳教, 查實其委折, 則待令書吏金繼朴招內 『汨沒使役, 罪人安景濂移配草記批答錯漏, 未卽騰送, 而雖有本曹之連日搜問, 認以爲姑未啓下, 以此通及矣。至于今月十一日, 始乃考閱啓下草記軸, 則去月二十九日, 果已允下, 故驚遑騰送。其遲滯之罪, 萬死無惜。』云。執吏書吏尹學洙招(來→內) 『文書紛踏之際, 今此罪人安景濂移配關文中, 年月十月之十字, 誤書以九字, 其所昏迷不審之罪, 萬死無惜。』云。金繼朴, 身爲待令書吏, 莫重草記批答, 趁不書送, 十餘日遲滯, 萬萬痛駭, 尹學洙, 亦以執吏書吏, 關文誤書, 誠爲駭然, 竝爲除汰嚴囚, 待用刑, 從重科罪。臣亦有矇未覺察之失, 惶恐待罪之意, 敢啓。’”

148) 『銀臺便攷』 「刑房攷」 〈臺諫〉, “兩司啓辭, 以承傳色入啓, 必詣臺爲之。【批下後, 詣臺廳傳批, 出去後, 則直爲分付。】”

批答判付는 신민의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지 않고 국왕의 비답을 적어서 내려주는 판부로, 비답을 어디에 적느냐에 따라서 別紙批答과 餘紙批答으로 나뉘었다. 別紙批答은 신하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비답을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적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上疏, 劄子, 呈辭에 활용되었다. 餘紙批答이란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啓字印을 찍지 않고 국왕의 비답을 적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草記, 啓辭, 書啓에 활용되었다.

啓字判付를 하는 것이 원칙인 상달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啓字印을 찍기 때문에 啓字判付 대신에 批答判付를 활용할 수 없었다. 다만 呈辭는 啓字判付를 활용하되, 관원의 질병 때문에 휴가를 청하거나 교체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身病呈辭, 鍼灸呈辭, 沐浴呈辭 등에 대해서는 批答判付를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批答判付를 하는 것이 원칙인 상달문서의 경우에는 批答判付 대신에 啓字判付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上疏와 劄子에서 청한 대로 辭職을 허락하거나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回啓할 필요가 있을 때, 草記·啓辭·書啓를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回啓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啓字判付를 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3개 상달문서에 대한 판부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판부 방식

문서명	판부 방식	啓字判付			批答判付	
		奉教判付	啓判付	落點判付	別紙批答	餘紙批答
啓本			●			
啓目		●	●			
狀啓			●			
單子		●	●	●		
別單			●			
上言			●			
擊錚原情			●			
呈辭			●		●	
上疏			◇		●	
劄子			◇		●	
草記			◇			●
啓辭			◇			●
書啓			◇			●

● 는 원칙적으로 활용되는 판부 방식이고, ◇는 보조적·예외적으로 활용되는 판부 방식임.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판부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종 상달문서에 대한 실제 판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실물이 다수 남아있는 상달문서 및 그에 대한 판부는 눈으로 판부를 확인하여 해당 문서의 판부 방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실물만 남아있거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는 상달문서의 경우는 관찬사료 등에 수록된 사례를 통해서 판부 방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지금보다

많은 실물 상달문서 및 판부를 확인하게 되고 아직 개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달문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 투고일 : 2020년 0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2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0일

참고문헌

1. 자료

- 崔 恒 등, 『經國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金在魯 등, 『續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金致仁 등, 『大典通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趙斗淳 등, 『大典會通』,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具允明, 『典律通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李 翊 등, 『受教輯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趙顯命 등, 『新補受教輯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承政院, 『銀臺便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承政院, 『銀臺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趙斗淳 등, 『六典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朴一源, 『秋官志』,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承政院, 『政院故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廖道南, 『殿閣詞林記』,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2. 논저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鐘 : 盧尙樞家와 朴春魯家の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3집, 한국고문서학회, 2008.
 노인환,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노인환,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제4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無啓目單子の 형식과 용례」,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명경일, 「조선초기 啓目 연구」, 『고문서연구』 제39호, 한국고문서학회, 2011.
 명경일, 「조선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규장각』 4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명경일,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988.
 심영환, 「고문서용어 풀이 -草記-」, 『고문서연구』 제2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2.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제32호, 한국고문서학회, 2008.
 양진석, 『최승희 서울대 명예교수 소장 조선시대 고문서IV』, 도서출판 다운샘, 2007.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藏書閣』 제12집, 2004.

-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 이강욱,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45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 이강욱, 「『日省錄』 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 이강욱,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 이강욱, 「上疏와 劄子の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조광현, 「朝鮮 後期 褒貶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95.
-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1996.
- 許同莘, 『公牘學史』, 中國人民大學印刷廳, 1958.

3. 전자자료

- 『朝鮮王朝實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承政院日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內閣日曆』: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高麗史節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萬機要覽』: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儒胥必知』: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判付規式』: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喉院笏記』: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 『百憲摠要』: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yoksa.aks.ac.kr>).
- 『傳教軸』: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 『東國李相國全集』: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明齋遺稿』: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Abstract

The Method of the King's *Panbu*(判付) on Documents Presented by the People to the King in the Late Joseon Period

Lee, Kang-Wook*

Among the documents presented by the people to the king included in the law code and official documents in Joseon dynasty, there were 13 types of them where the king issued his approval, the *panbu*: *gyebon*, *gyemok*, *janggye*, *danja*, *byeoldan*, *sangeon*, *gyeokjaeng wonjeong*, *jeongsa*, *sangso*, *chaja*, *chogi*, *gyesa*, and *seogye*. The king's approval on these documents were given largely in two ways: stamping the seal with the letter 'gye' on it or giving an answer with a written letter without placing a seal. The former method was known as *gyeja panbu*, which was mostly used in *gyebon*, *gyemok*, *janggye*, *danja*, *byeoldan*, *sangeon*, and *gyeokjaeng wonjeong*, while the latter was known as *bidap panbu*, which was mostly used in *chaja*, *chogi*, *gyesa*, and *seogye*. In case of *jeongsa*, both methods were in use.

Gyeja panbu was an approval method in which the king placed the seal on the blank space at the end of the document. This was again divided into *bonggyo panbu*, *gye panbu*, and *nakjeom panbu* according to what letter was written at the beginning of the king's judgment. In *bonggyo panbu*, word 'bonggyo' was written at the opening of the king's remark, and it was used in *danja* and *joyul gyemok*. In *gye panbu*, the letter 'gye' was written at the opening of the king's remark, and it was used in *gyebon*, *gyemok*, *janggye*, *danja*, *byeoldan*, *sangeon*, *gyeokjaeng wonjeong*, and *jeongsa*. In *nakjeom panbu*, word 'nakjeom' was written at the opening of the king's remark, and it was mostly used in *danja*.

Bidap panbu was an approval method in which the king's answer was given in a written letter, *bidap*, instead of using the stamp. This was divided into *byeolji bidap* and *yeoji bidap* depending on where the *bidap* was written. In *byeolji bidap*, a written answer to the minister's document was given in a separate paper, and it was used in such documents as *sangso*, *chaja*, and *jeongsa*. In

* Institute of the Eundae Classic Literature, Advisory Committee for Historical Source Translation

yeoji bidap, a written answer was given on the blank space at the end of the document, and it was used in such documents as *chogi*, *gyesa*, and *seogye*.

In a document where *gyeja panbu* was a rule, *bidap panbu* was not allowed in place of *gyeja panbu*. In case of *jeongsa*, however, although *gyeja panbu* was mostly used, those documents with specific requests asking for a sick leave or replacement including *sinbyeong jeongsa*, *chingu jeongsa*, and *mogyok jeongsa* were given *bidap panbu* at times. On the other hand, even in a document where *bidap panbu* was a rule, *gyeja panbu* was allowed instead of *bidap panbu*. For instance, when a permission was issued to a resignation request asked in *sangso* and *chaja* or when these documents were sent down to a relevant government office asking for its opinion-*chogi*, *gyesa*, and *seogye* alike-*gyeja panbu* was also in use.

Key words : gye, bonggyo, nakjeom, gyeha, gyejain, panbu, bidap

